

기관위임사무 및 법정수임사무 행·재정 지원방안

2009. 12



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 2 장 위임사무에 관한 이론 및 실무적 논의	5
제1절 기관위임사무의 법적 근거와 개념	5
1. 사무의 구분기준	5
2.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기준	7
3. 자치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의 경비부담 주체	9
제2절 기관위임사무의 이행실태	11
1. 기관위임사무가 제기하는 문제	11
2.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필요성	13
3. 사례: 일본의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사무구분 재편	14
제3절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및 대안 논의	16
1. 사무이양에 따른 기관위임사무 폐지 방향	16
2. 기관위임사무의 법정수임사무화 방향	17
제 3 장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 소요비용 분석	22
제1절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지원 실태	22
1. 지방이양 추진실적	22
2. 행·재정 지원실태	24

제2절 지방이양사무의 비용분석 추계	26
1. 비용산정을 위한 구성요소 및 기준	26
2. 조사설계 및 인력 산정	37
3. 비용산정 결과	44
4. 비용산정 방법 및 조사결과의 한계	47
제 4 장 위임사무 폐지에 따른 행·재정지원 방안	49
제1절 행·재정지원 기본방향	49
1. 행·재정지원 방향	49
2. 재정지원 기본방향	50
제2절 재정지원 방안	54
1. 지방이전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	54
2. 재정특례를 활용하는 방법	59
제3절 행정적 지원 및 법정비 방안	61
1. 법정수임사무 도입에 따른 법령 개정방안	61
2. 이양에 따른 관련 법제 정비안	62
3. 지방이양 후 사후적 보완	63
4. 정책제언	67
부록 : 기관위임사무 목록	68

표 목 차

<표 1> 1-2차 표본조사 대상 지역	3
<표 2>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사무구분 기준	6
<표 3> 기관위임사무와 법정수임사무 간 차이	9
<표 4> 비용산정을 위한 구성요소 도출	26
<표 5> 1차 연구방법에 근거한 인건비 산정 분석표	28
<표 6> 직급별·직군별 표준 호봉	29
<표 7> 일반직 공무원 1인당 연간 인건비 표준액	29
<표 8> 기능직 공무원 1인당 연간 인건비 표준액	30
<표 9> 소방직 공무원 1인당 연간 인건비 표준액	31
<표 10> 무기계약근로자 등급별 1인당 연간 인건비 표준액	31
<표 11> 예산을 기준으로 경상비 산정시의 분석표	33
<표 12> 간접적 경상비 조사표(예시)	33
<표 13> 사업비 조사표(예시)	36
<표 14> 비용산정 대상사무 분야	38
<표 15> 광역시 산하 군 소요인력 추정 계수	43
<표 16> 조사대상 광역-기초자치단체별 인건비/경상비 비용추계 현황 ...	44
<표 17> 대상 자치단체별 소요비용 추계 상황	45
<표 18> 지방자치단체 총소요비용 추계 결과	45
<표 19> 조사대상 기초-광역자치단체(20개) 사업비 총계	46
<표 20> 측정항목별 보정계수 산정공식	56

그림목차

<그림 1>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산정의 흐름도	52
----------------------------------	----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 기관위임사무는 현재 실질적인 사무수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제정에 제약을 받고 있고 지방행정의 자주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방이양이 필요한 사무임
- 2008년 제정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서도 “국가사무 또는 시·도의 사무로서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재정법 제21조 제2항에서는 “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사무구분체계 개선방안 확정의 경우, 기관위임사무가 자치사무 및 법정수입사무(가칭)로 전환되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처리를 위한 재정지원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의 기관위임사무 처리에 수반되는 비용규모를 추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전환을 위한 소요재정을 예측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기관위임사무 정비에 따른 행·재정 지원사항 준비를 위한 기초자료 제공에 연구목적이 있음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개요

- 본 연구는 2009년 3월 지방분권지원단에서 실시한 연구¹⁾(이후 1차 연구로 칭함)의 후속 연구로 이전 연구와 동일한 연구방법을 채택
- 본 연구를 이전 연구와 동일한 방법 및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연구과업 내용과 범위상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별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로부터의 협조없이 불가능한 상황인 바 이와 같은 시간적·물리적 제약으로 기관위임사무 전체의 실제 소요비용을 분석하기 어렵기 때문에 표본조사에 기초할 수 밖에 없음. 또한 비용추계 방법을 1차 연구방법과 달리할 경우 비용추정 결과에서 차이가 발생하게 됨
 - 둘째, 따라서 이미 제1차 연구에서 부분적으로 조사·분석된 추계결과가 도출되었기 때문에 전체 결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 후속 연구에서도 분석방법 및 대상을 동일하게 활용하여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2. 연구의 범위

가. 분석대상

- 기관위임사무 총 1,128건('08.3월 행안부 자체 파악)에 대한 행·재정 비용을 추계함
 - 이양(493건-333건=160건), 환원(121건), 존치(514건)

1) 행정안전부 분권추진단에서 한국지방정부학회에 의뢰하여 추진한 연구임(참조: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연구, 2009. 5)

- 이미 제1차 연구에서 수행한 이양 493건 중 333건 등의 비용추계는 제외
- 본 2차 연구는 기관위임사무 (환원대상 121건, 존치대상 514개 등) 147개 기능 635개 사무를 대상으로 함

나. 조사 대상지역

- 광역자치단체
 - 광역시: 서울, 대구, 부산(기관위임사무 일부)
 - 도: 경기도, 충남, 경남, 제주특별자치도(기관위임사무 일부)
- 기초자치단체
 - 자치구: 영등포구, 수성구, 달성군
 - 시 자치단체: 부천시, 구리시, 파주시, 천안시, 논산시, 진해시, 김해시
 - 군 자치단체: 연천군, 홍성군, 하동군
- 실조사 실시지역(1차조사: 2009년 11월~12월, 2차조사: 2010년 1월~2월)

<표 1> 1-2차 표본조사 대상 지방자치단체(20개)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	군	구
특별시	서울시		-	영등포구
광역시	대구시	-	달성군	수성구
	부산시			
특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	경기도	부천시, 구리시, 파주시	연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논산시	홍성군	
	경상남도	진해시, 김해시	하동군	

다. 연구의 내용

- 기관위임사무 (환원대상 121건, 존치대상 514개 등) 147개 기능 635개 사무를 대상 행·재정 소요비용 추계
- 법정수임사무에 대한 행·재정 지원방안 제안
 - 재정지원방안: 법정수임사무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고 원칙적으로 재정 지원이 의무화되므로 실무상 적용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음
 - 행정지원방안: 지방자치법 및 개별법령의 지원관련 규정 및 법정수임사무 처리에 필요한 인력지원방안, 국고보조금 지원안 등임

3. 연구의 방법

가. 비용추계 과정

- 본 연구는 현장조사를 통한 실증적 비용분석을 추계하고자 함
- 비용추계를 위한 현장조사 대상지역의 표본 자치단체에 대한 sampling과 사무수행 공무원에 대한 조사표 조사를 통해 분석함

나. 비용의 분류

- 단위사무에 대한 정확한 비용산정이 가능해야 이양 사무에 대한 재원보전 요구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 바, 이에 대한 방법론을 연구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비용산정 방법을 모색함
- 비용산정 관련 구성요소는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로 구분·적용함

제 2 장 위임사무에 관한 이론 및 실무적 논의

제1절 기관위임사무의 법적 근거와 개념

1. 사무의 구분기준

가. 사무의 구분

- 지방자치법 제8조~제11조에서 국가사무(제11조)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지방사무
 - 지방자치법 제9조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는 사무배분상 지방자치단체가 처리가 가능한 대상을 범위로 함
 - 내용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관운영에 필요한 사무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게 하는 (국가의 기관) 위임사무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
-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7대 분야
 -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주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무,

-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 교육, 체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 지역민방위 및 소방에 관한 사무 등임

○ 이러한 사무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다고 제한적으로 열거하여 규정한 것으로 국가위임사무를 포함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 기준

<표 2>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의 사무구분 기준

자치단체의 구분	사무구분 기준	사무구분 법적 근거
광역자치단체의 사무	행정처리의 결과가 2개 이상의 시·군·구 및 자치구에 미치는 광역적 사무,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리되어야 할 사무, 지역적 특성을 살리면서 시도단위로 통일성을 유지 할 필요가 있는 사무, 국가와 시·군 및 자치구간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시·군 및 자치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에 부적당한 사무,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규모의 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지방자치법 제10조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를 규정
기초자치단체의 사무	주민복리에 관한 포괄적인 사무이며, 단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는 서로 경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그 사무가 서로 경합되는 경우 시·군 및 자치구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할 사무 등이 이에 속함	지방자치법 제10조에서 광역자치단체가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를 제외한 사무 등으로 규정

2.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기준

가. 자치사무

○ 자치사무의 법적 근거와 개념

-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전단, 제2항, 제103조에 근거
- 자치사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자율적 재정부담 하에 주민의 공공복리를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을 위하여 처리하는 사무를 말함
- 헌법상 의미를 유추하면 주로 주민의 공공복리(토목사업·도시계획·위생 등)에 관한 것으로서 당해 구역 내에 한정된 사무임

○ 자치사무의 세분화

- 자치사무란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세분하면 다음과 같음
-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의 목적에 속하는 사무,
- 자기의 책임과 부담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처리하는 포괄적 의미의 사무,
- 법령으로 위임되지 아니한 사무로서 주로 주민에 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권력적 사무 등임

※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함(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

나. 위임사무

○ 위임사무의 법적 근거와 개념

- 국가사무의 위임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에서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국가사무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시·도지사 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행한다”고 규정한 근거에 따르고 있음
- 이어서 동법 제10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하부)기관 등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위임사무란 국가 또는 상급행정기관이 본래 수행하여야 할 사무 중에서 법률 또는 대통령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도록 위임한 사무임

-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사무의 처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정책과 목표는 국가가 결정하고 그 집행에 대해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게 되며, 시도자치단체의 시군구로의 위임사무도 이와 같음

○ 위임사무에 대한 행정적·정책적 의사결정은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에 있으며, 이 사무는 원처리권자가 국가(국가위임사무) 또는 시도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위임사무)에 귀속된 행정행위 효력을 발생시킴

다. 기관위임사무의 개념

-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의 내용상 위임사무를 크게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 2가지로 구분하지만 단체위임사무는 극히 적고 구별의 실익이 없음

- 기관위임사무의 법률적 표현은 “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사무” 또는 “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은 사무”(지방자치법 §41, §103, §104, §167)로 표현됨
- 기관위임사무는 국가사무(지방자치법 제11조)의 성격을 가지며, 사무를 수입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하부행정기관의 지위에서 위임사무를 처리하지만 국가사무(상급자치단체의 경우도 동일)로서의 법적 성질에는 변함없음

3. 자치사무 및 기관위임사무의 경비부담 주체

- 자치사무 수행에 대한 경비부담
 - 자치사무는 해당 자치단체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무이며 사무처리의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임
 - ※ 지방재정법 제20조(자치사무에 관한 경비)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액을 부담한다.
-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보조의 근거가 법령에 없더라도 중앙과 상급자치단체는 보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은 자체재원 또는 국가의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무처리가 가능함
- 기관위임사무 수행에 대한 경비부담
 - 지방자치법 제103조 후단에 의하여 자치단체의 사무와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처리하도록 하고 있음.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법령상 경비부담 관계는 국가 및 상급자치단체가 각 사무별로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하여야 하나(지방재정법 제21조제2항 및 제28조) 실제로는 교부금 등으로 포괄적으로 부담하고 있음

※ 제21조(부담금과 교부금) ①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이 법령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무로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 그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국가에서 부담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②국가가 스스로 행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에, 그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가 그 전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

제28조(시·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부담) 시·도 또는 시·도지사 시·군 및 자치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집행하게 하는 때에는 시·도는 그 사무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 사무수행과 관련하여 생기는 수입은 국가수입이 되어야 원칙이지만, 사무처리비용을 제대로 교부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료·과태료·과징금의 자치단체 귀속을 인정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29조 및 제31~32조)

제2절 기관위임사무의 이행실태

1. 기관위임사무가 제기하는 문제

가. 기관위임사무로 인한 자치권 제약

-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위임사무의 존재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 자치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별은 실정법상 지방자치단체에게 사무처리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포괄적으로 부여하고 있느냐(자치사무), 아니면 사무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위임한 것이냐(위임사무)하는 방법의 차이에서 구할 수밖에 없음
- 그러나 기관위임사무의 존재로 인하여 지방자치 역기능이 지속적으로 존재하게 됨
 - ① 지방자치단체를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이에 대한 원인으로 첫째 각급 부자치단체장에 대한 인사권이 중앙정부에 있다는 점, 둘째 중앙정부의 자치단체에 대한 지도·통제권이 세부적으로 집행되고 있음. 셋째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장려보조금, 교부금)과 기관위임사무와의 결부 등에서 다양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
 - ② 기관위임사무를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광범하고도 강력한 중앙통제의 중요한 통로로 작용함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행정적 책임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만들고 있음

- ④ 민주적(시민) 통제를 배제하게 되는 부정적 효과가 지속됨
- ⑤ 각 지방의 특수성과 배분적 형평성을 희생시킬 수 있음

나. 기관위임사무로 인한 지방행정 사무수행체계의 혼란

- 행정법학적 관점에서 기관위임사무의 존재로 인하여 폐해를 주는 경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① 행정조직의 법정주의를 허물고 있고, ② 권한과 책임의 분리가 지속되며, ③ 수입자는 고유사무만큼 책임을 느끼지 않는 상황이고, ④ 법상 원처리권자와 실제 권한행사자 간 분리로 인하여 여러 가지의 행정적 혼란이 지속됨²⁾
- 이상과 같은 이유에서 기관위임사무가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기관위임사무의 과중한 하중에 놀려 그 존립목적과 직결된 고유사무의 처리가 날로 위축됨으로써 중대한 장애요인이 발생하게 됨
- 뿐만 아니라 기관위임사무가 정해지는 절차를 보면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합의나 검토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 각 부처 단독판단에 의하여 좌우되며 실제로 사무를 처리하는 자치단체장은 소외되고 있음³⁾
- 우리나라에서는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 지방의회는 집행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히 단체장이 집행권을 행사하여 국가의 사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법적 명칭으로 명기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2) 일본이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개선하여 '법정수탁사무'의 개념을 도입한 경우도 기관위임사무가 제기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김남진, <기관위임사무의 법적 고찰>, 자치행정, 1992. 3. 홍정선 교수는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의 본래의 취지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3) 유봉영, 한국지방자치의 발전정책론, 법학박사학위논문, 1991, p.228 이하.

- 선진국의 경우에는 자치조직권, 자치행정(집행)권,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의 보장 규정에 근거하고, 집행권은 당연히 단체장의 직접적인 책임 하에 수행하는 법체계상 <위임사무>의 직접적인 수행책임은 단체장에게 있어 명확한 지방행정 사무수행체계를 유지함

2.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필요성

-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관위임사무에 의해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광범위한 통제가 계속된다거나, 국가와 자치단체간 사무수행에 따른 결과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지거나, 지역의 특수성 및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음
 - 지방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권한과 책임의 일치원칙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행정주체나 국민들이나 모두 행정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고, 더구나 기관위임사무의 결정은 중앙정부 각 부처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져 지방분권 취지를 저해하기도 함⁴⁾
- 실무적으로 행정환경의 빠른 변화에 따라서 자치사무와 위임사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고, 기관위임사무와 관련한 법적 표현은 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상황임
 - 때문에 실정법상 지방자치단체에게 사무처리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포괄적으로 부여하고 있느냐(자치사무), 아니면 사무를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위임한 것이냐(위임사무)하는 방법의 차이에서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구별하고 그에 따른 수행방법과 결과에 대한 책임소재 등을 사후적으로 따져야하는 불편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행정적 역기능이 다분히 소재함

4) 서원우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내지 지방자치제도를 이용하여 국가의 사무를 처리케 하는 교묘한 중앙집권적 행정방식의 하나가 위임사무이며, 이중에서도 기관위임사무가 그렇다고 언급한 바 있다(서원우, 1997: 290).

3. 사례: 일본의 기관위임사무 폐지 및 사무구분 재편

가.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이유

- 일본에서 기관위임사무는 중앙-지방정부간 관계를 상하, 주종관계로 만들었으며, 도도부현 지사, 시정촌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대표자와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장으로서 이중의 역할 부담을 주었다고 판단함
- 이로 인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행정책임이 불명확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국가의 포괄적인 지휘감독권에 의한 사소한 관여로 지방자치단체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이 지속되어 왔음
-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도도부현, 시정촌의 종적인 상하, 주종관계에 의한 경직된 행정시스템을 전국에 획일적으로 구축시키는 결과를 낳아 지역의 종합행정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폐지하게 되었음

나. 후속조치: 관련 법규정의 폐지 및 개정

- 일본의 구 지방자치법 별표3과 별표4에 도도부현 단계, 시정촌 단계의 기관에 위임되어 있는 기관위임사무가 열거되어 있었으나 이를 전면 폐지
 - 별표 제3 및 제4의 561항목의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전면 삭제. 별표 제1, 제2(처리의무가 부과된 단체사무) 및 별표 제5 (필치의 행정기관), 제6조(필치의 직), 제7조(필치의 심의회) 등도 삭제
- 기관위임사무제도와 관련한 규정도 삭제
 - 주무대신, 도도부현 지사의 지휘감독권(구법 제150조), 시정촌장이 처리하는 국가 또는 도도부현의 사무에 관련되는 도도부현 지사의 취소, 정지권(구법 제2152조1항), 장에 대한 직무집행명령(구법 제151조의 2), 기관위임사무를 열

거한 별표 및 그 근거규정(구법 제148조 2항, 3항, 제180조의8의 2항, 제180조의9의 3항, 제186조 3항, 제202조의2의 제6항 및 별표 제3 및 제4) 등의 삭제

○ 관련규정의 개정

- 지방자치단체장의 기관위임사무 관리 및 집행권(구법 제148조1항)을 개정하고, 도시계획법, 토지개발법, 식품위생법 등에서 '도도부현 지사(또는 시정촌장)'를 '도도부현(시정촌)'으로 개정
- 지방자치법(시행령)의 별표 제1과 제2 뿐만 아니라, 각 개별법(동 시행령)에도 법정수탁사무의 범위를 정하였음

다. 사무구분 재정비: 기관위임사무의 자치사무화(법정수임사무)

- 일본 지방분권추진위원회에서는 기관위임사무를 4종류로 구분하여 자치사무화를 추진하였음
- 전체 561항목의 기관위임사무(별표 제3과 제4)에 대하여 자치사무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기관위임사무의 약 6할을 자치사무화 하였고, 약 4할을 법정수탁사무화 하였음. 특히 복지, 교육, 토지이용 등 자주 기능을 자치사무화
- 자치사무화 과정에서 각 사무를 크게 4가지로 구분하면서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였음
 - ① 폐지해도 괜찮은 것 : 사무자체의 폐지(11항목)
 - ② 대부분은 자치사무로 이행시킬 것 : 자치사무로 이행(398항목)
 - ③ 상당히 예외적인 것으로 전적으로 국가의 이해에 관련된 사무는 법정수탁사무로 바꿀 것: 법정수탁사무로의 이행(275항목)
 - ④ 매우 예외적인 것으로 국가에 반환해서 일관적으로 국가가 직접 집행하는 시스템으로 바꿀 것 : 국가의 직접 집행사무(20항목)

제3절 기관위임사무의 폐지 및 대안 논의

1. 사무이양에 따른 기관위임사무 폐지 방향

- 이명박 정부는 2008년 제정된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항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도의 사무로서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음
- 2009년말 지방이양 실적
 - 2009년 말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발표에 따른 중앙행정 권한 지방이양 실적을 보면 지난 10년간 이양한 2,265건 가운데 올해에만 697건 이양을 확정했고, 지난 10년 동안 실적 중 30%, 최근 5년간 이양 건수의 77.3%가 되는 비율임
 - ※ 2009년 대표적인 지방 이양 사례 : 지방의 실정에 맞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시·도교육청에 필요한 기구 설치 권한으로 그간 중앙이 갖고 있던 조기 진급과 조기 졸업의 활용 권한도 지역 사정에 맞게 활용하도록 하였음. 또 방송통신 부문 중 유선방송 허가 기능을 지방에 넘겨 정보통신 활성화를 촉진하도록 함. 산림 부문에서 수목원의 조성권과 진흥 기능을 이양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산림육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음
- 2009년 사무총조사 결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2009년도 실시한 사무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총사무수는 42,320개로 국가사무가 30,215개(71.4 %)이고, 지방사무는 12,105개(28.6%)임
 - 이를 다시 본 조사의 「신규기준」에 따라 국가의 위임사무를 세분화 한 재분류에 의하면, 국가사무는 28,980건(68.5%), 지방사무는 11,817(27.9%)이고, 법정수임사무(가칭)는 1,523(3.6%)임

○ 2009년 사무총조사 결과에 기초한 사무이양 방향

- 최근의 사무총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행정안전부가 2009년 12월 30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한나라당(권경석 의원)에 제출한 '사무총조사' 자료에 따르면 1,984건의 국가사무가 광역자치단체로, 1,381건의 국가사무는 기초단체로 이양되어 총 3,365건의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될 것으로 보고한 바 있음
- 또 617건의 광역단체 사무는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되며, 동시에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관리하는 법정수임사무의 경우는 1,331건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고 함
- 이 경우 현행 71.7%대 28.3%인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은 각각 68.5%대 31.5%로 바뀐(행정안전부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법령상 사무 총조사' 연구용역 결과 보고)

2. 기관위임사무의 법정수임사무화 방향

- 본 연구는 앞서 연구방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8년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파악한 기관위임사무(1,128건)를 대상으로 법정수임사무화를 가정하고, 사전 중앙-지방간 사무배분 판단을 하여 이양사무와 환원 및 존치사무로 구분하였던 것임

가. 기관위임사무 폐지에 따른 '법정수임사무'(가칭) 도입

- 국가는 2009년 '사무총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2010년부터 각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기관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 등을 폐지하고 대신 '법정수임사무'라는 개념을 도입하려고 함⁵⁾

5) 한국지방자치법학회('08.6~'08.10), 사무구분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 참조.

-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권을 제약하게 되는 바, 도로 및 하천관리와 폐기물 단속 등과 같은 기관위임사무는 본래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해야 하지만 시간적, 공간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그 처리를 위임한 사무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앙의 감독권 행사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폐지하고자 함
 - 이러한 정비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그리고 지방의회가 사무처리를 위한 조례제정권과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게 되는 법정수임사무는 지방자치법상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재정부담의 주체를 분명히 하면서, 그 사무처리를 위한 정부와의 관계도 현재의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로 전환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 사무종류의 단순·명확화를 위한 개선방향: 법정수임사무 개념의 도입
- 현행 단체위임사무 폐지하고 기관위임사무를 「법률에 의한 수임사무」(법정수임사무)로 대체하고, 자치사무 및 법률수임사무의 법적 성질과 특성을 법률(지방자치법)에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즉, 사무의 위임여부를 시행령에서 규정하지 말고, 법률에서 사무의 종류와 처리할 기관을 직접 규정하게 함. 예를 들면, 개별 법률의 위임 근거 조항 및 시행령의 위임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수임사무를 관련 법률 조항에서 직접 명시하여 각 개별법의 개정을 유도함
- 법정수임사무, 즉 「법률에 의한 수임사무」란 국가가 본래 수행하여야 할 사무이나 국민의 이익, 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도록 법률로 규정해 놓은 사무임
- 기관위임사무와 향후 도입 예정인 '법정수임사무'의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표와 같음

<표 3> 기관위임사무와 법정수임사무 간 차이

구 분	기관위임사무	법률에 의한 수임사무
감독의 수단	법정수단+지시 등	법률에 정해진 수단에 한정
감독기관	주무부처	주무부처
지방의회의 조사, 감사	불허용 원칙 (단,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 예외규정)	원칙적 허용
조례제정권	원칙적으로 없음	원칙적으로 있으나 법률로 예외인정
비용부담	중앙정부(실제와 상이)	중앙정부
단체장의 지위	국가기관	지방기관

나. 법정수임사무의 성격

- (가칭)법정수임사무는 그 성질상 법률 또는 이에 기초한 시행령 등에 명확하게 사무범위를 설정한 뒤,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결적으로 법률에 근거한 명령에 의해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 될 것임(이 경우 일본과 같은 ‘필치규제’의 준수가 요구될 수 있음)
- 국가에서 사무처리 기준에 관한 내용들이 제정되면 이에 따라야 하며, 이때 법령에서 조례에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취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은 조례의 제정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제약은 남아있을 수 있음
- 다만 지방자치의 본래적 의미와 국가-지방자치단체 간 역할분담 원칙을 고려하고, 규제수단의 비례원칙 적합성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사무별로 조례제정 필요성과 그 내용의 합리성을 판단할 수는 있을 것임

- 기존의 기관위임사무를 정비 또는 폐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는 사무 이외의 것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률 수준에서만 (가칭)법정수임사무를 규정할 것인지 또는 이를 시행령상에서도 각 중앙행정기관이 규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관해서는 국회 등에서 입법권 범위에 관한 세부적인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수임사무는 위임과 위탁의 기본적 성격을 그대로 갖고 있는 상황이 될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방의회의 관여 등 책임소재는 분명히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어 지방행정에 의한 사무수행체계상에서는 결과의 책임성, 재정부담성 등에 대한 혼란은 없어질 것으로 판단함

다. 사례: 일본의 기관위임사무 개선

- 일본 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 가장 중점을 두었던 부분은 기관위임사무의 폐지였음.⁶⁾ 종전의 기관위임사무 44%가 대폭 자치사무로 이양되었고, 법정수탁사무는 39%,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는 6%, 폐지된 사무는 2%로 변화되었음. 국가의 관여는 8%로 조사되었고, 이로써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비판을 대폭 수용하여 사무를 정비하면서 대폭적으로 자치사무화 및 법정수탁사무화 하였음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관련 법규정을 전면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공공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이외의 사무인 행정사무(구 법제2조 2항), 기관위임사무 등의 구분을 폐지하였음

6) 윤재선, 중앙-지방간 융합구조의 성격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기관위임사무를 중심으로 한 실증적 연구, 지방행정연구 2006년 3월, p.103~130 .

- 새로운 사무구분을 정립하기 위하여 일본의 신 지방자치법 제2조 제8항~제9항에서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로 개념 정리를 하였음
- 즉,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는 '지역의 사무'와 '법률 또는 이에 근거한 정령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사무'의 두 가지로 정비(일본 지방자치법 제2조2항)

제 3 장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 소요비용 분석

제1절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지원 실태

1. 지방이양 추진실적

가. 지방이양 실적

- 지난 10년간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실적은 2,265건, 2009년에는 697건의 이양을 확정
 - 이 중에서 중앙부처에서 지방으로 인·허가 등 권한이 이양된 건수는 599건
 - 부처별로 10년간 지방이양이 많았던 곳은 국토해양부 463건, 환경부 362건, 보건복지가족부 213건, 농림수산식품부 191건, 지식경제부 174건, 산림청 159건 순임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이양
 - 2009년 기준으로 국도·하천, 해양·항만, 식·의약품 등 3개 분야의 특별지방행정기관의 특행업무가 이양됨
 - 현재 11개 법률 중 항만법 등 9개 법률의 개정 공포가 완료.
 - 다만 행·재정 이양과 관련해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황임. 2009년 말까지 인력·예산을 확정해 2010년부터 이관할 계획이나, 부처 협의과정에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특히 2010년에 이관될 노동·보훈·산림·중기·환경 등 5개 분야는 권한 고수와 신분 변경(국가→지방)으로 인한 인사 불이익을 우려한 각 기관 인력의 반발 등으로 갈등을 겪고 있음

나. 지방이양 사례: 국토해양부 → 시·도

○ 국토관리권의 지방이양

- 국가관리 대상이었던 일반국도의 25% 구간이 이양됨.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시행함
- 개정령에 따르면 현재 국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1만2천503km 가운데 63개 구간, 2천918.7km(약 25.4%)의 관리권이 이양됨. 구체적으로 18번 국도의 진도 고군~진도대교 구간(86.2km)과 28번 국도의 의성~영천 구간(59.8km) 등 1개 도(道)에 국한되는 국도 노선 14개 구간(789.9km)이 지방자치단체에 법정수입사무로 위임됨
- 또 2번 국도의 순천~광양 구간(45.9km)처럼 시가지를 지나는 5개 구간(108.3km)과 1번 국도의 평택~진위 구간(4.1km)과 같이 인근 국도와 병행하고 도시를 잇는 3개 구간(23.9km)의 관리권도 법정수입사무화 됨

○ 항만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무역항 관리업무가 법정수입사무화 됨

- 전국 29개 무역항 가운데 15곳의 관리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됨(국토해양부). 개정령에 따르면 국가가 관리해온 무역항(현재 28곳)은 경인항과 동해호산항이 추가되고, 동해항과 묵호항이 동해묵호항으로 합쳐져 29개 항임
- 이에 시·도지사가 관할하는 연안항은 24개 항에서 통영 중화항이 추가돼 25개로 증가 될 것임. 개정령은 특히 무역항을 국가 및 지방 관리항으로 나누어 부산·인천·울산·목포항 등 14곳을 제외하고 속초·제주·삼척항 등 15개 무역항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법정위임함
- 대천항과 주문진항 등 25개 '연안항'은 종전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하는 기관위임사무 중에서 존치사무에 해당

- 개정령은 이런 원칙을 토대로 지방관리항과 연안항의 항만관리 업무 중 항만 지정, 항만기본계획 수립, 항만요율 결정 등 정책적인 사항은 국가가 맡도록 하는 대신 항만공사 시행과 시설운영 등은 시·도지사에게 법정 위임하도록 결정하였음. 지금까지는 전체 무역항의 항만개발과 운영 및 연안항 건설 업무를 국토부가 수행하고, 연안항의 항만운영 업무만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었음
- 개정령은 또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국토부가 민간사업자로부터 직접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을 공모할 수 있도록 했음

2. 행·재정 지원실태

- 국토해양부 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지원실태
 - 법과 시행령의 정비가 완료되면 도로·하천 분야는 48명, 해양·항만은 59명의 인력과 예산이 지방이양 되어야 함. 이에 대한 부처간 협의는 완료됨. 2010년 상반기 이관될 공무원수는 208명, 총 인건비 예산은 96억원, 사업비는 4,5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음
 - 국도관리사무소 18개 등을 관리하는 지방국토관리청은 국도의 도로 포장·유실 등 유지 관리업무 일체를 국토해양부에서 해당 시·도로 이양하므로 이에 따른 사업비는 전체 도로예산 1조 75억원의 30% 수준인 2,500억원 정도가 될 것임
 - 해양·항만을 관리하는 지방해양항만청은 국내 화물을 담당하는 연안항 전체와 수출입 교역을 관장하는 주요 무역항 40개 항만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로 한 것임
 - 그에 따른 사업비 예산은 2,000억원 수준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될 것임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인력과 예산 이양

- 그밖에 서울·부산·대구 등 6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유해물질 등 각종 검사기능과 지도·단속 인력 101명도 일괄이양됨. 인력의 이양은 국가직에서 지방직 공무원으로 신분전환이 되는 것임
- 예산은 2010년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49억원이 확정, 지원될 것임

○ 분권교부세의 5년 연장 조치

- 2009년 폐지 예정이었던 분권교부세가 5년 연장되면서 주로 노인장기요양보험, 결식아동급식비, 장애인요양시설 등 복지업무에 재투자될 예정임
- 2010년 분권교부세 예산에 예년과 비슷한 1조 2,000억원을 반영하고(2009년 예산 1조 2,305억원으로 지방교부세 감축에 따른 10.7% 감소) 있음. 현재 기이양된 67개 복지사업에 8천억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분권교부세의 70% 수준임

○ 향후 방향

-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업무에 대한 예산지원이 주로 국고보조금 대신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하는 상황에 있음
- 지방재정력 강화를 위해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의 부가가치세 비중을 20%로 상향조정하고 교부세율을 높여 지방재원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이나 예산지원상 인·허가 등 단순 집행적 성격의 사무는 처리경비가 적고 계량화가 어려워 사무마다 재원 보전이 쉽지 않을 것임

제2절 지방이양사무의 비용분석 추계

1. 비용산정을 위한 구성요소 및 기준

가. 구성요소 선정

- 단위사무에 대한 정확한 비용산정이 가능해야 이양 사무에 대한 재원보전요구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 바, 객관적이고 신뢰성을 가진 비용산정 방법을 모색함
- 비용산정을 위해서는 비용 구성요소를 발굴한 후 구성요소별 산정기준을 적용함
- 비용산정과 관련하여 현재 활용되고 있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 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 2003-195호)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 산정기준(환경부고시 제2001-29호) 등의 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결국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음

<표 4> 비용산정을 위한 구성요소 도출

구 분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가기준	직접인건비	제경비	직접경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비용 산정기준	직접인건비	제경비	직접경비

- 이러한 점을 토대로 할 때 비용산정을 위한 구성요소를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인 바,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적용하고자 함

○ 따라서 사무위임에 따른 총 경비는 다음과 같음

- 총 경비 = 인건비 + 경상비 + 사업비

나. 구성요소별 산정기준

(1) 인건비 산정기준

- 인건비는 소요인력을 추정하는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음
- 첫 번째 방식은 각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인력을 직접 산출하는 방식이며 두 번째 방식은 소요인력을 추계하는 방식임
- 이중 첫 번째 방식은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소요인력이 몇 명이고, 각 인력이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월평균 투입시간이 어느 정도이며, 마지막으로 각 인력별 인건비표준액(직급을 고려)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방법임

$$\text{인건비} = \text{직급별 소요인원} \times \text{직급별 인건비 표준액} \times \text{월평균투입시간} / 176 \times 12$$

※ 1일 8시간 근무기준으로 하되 국공휴일을 제외한 1개월 평균일수를 22일로 가정하고 계산함. 이 경우 176시간이 산출됨

- 반면에 두 번째 방식은 표준지역의 소요인력 추계하여 그 결과를 동급 자치단체에 적용하는 방식임
- 첫 번째 방식은 인건비 산정이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전국으로 확대하기 곤란하다는 한계가 있음
- 뿐만 아니라 당해 사무처리에 소요되는 인력을 산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조사표를 별도로 작성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게 됨

<표 5> 1차 연구방법에 근거한 인건비 산정 분석표

구분	년도	일반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자치경찰/소방(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일용 등)			
		소요 인원	월평균 투입 시간	인건비 표준액	인건비 소요액	소요 인원	월평균 투입 시간	인건비 표준액	인건비 소요액	소요 인원	월평균 투입 시간	인건비 표준액	인건비 소요액	소요 인원	월평균 투입 시간	인건비 표준액	인건비 소요액
계	'06																
	'07																
	'08																
5급 이상 (자치경찰)	'06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07																
	'08																
6급 (자치경찰)	'06																
	'07																
	'08																
7급 (자치경찰)	'06																
	'07																
	'08																
8급 (자치경찰)	'06			란	란			란	란			란	란			란	란
	'07																
	'08																
9급 (자치순경)	'06																
	'07																
	'08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국으로의 확대가 가능하고 두 번째 방식인 소요인력 추계방식을 통해 인건비를 산정하고자 함
- 이 경우 업무량을 인건비로 환산시에는 직급별·직군별 인건비가 상이함을 감안하여 직급별·직군별 업무량을 산정한 후 이에 대해 직급별·직군별 인건비를 곱해줌으로써 소요 인건비를 추계하였음
- 직급별·직군별 인건비 역시 호봉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직급별·직군별 표준 호봉을 적용하여 인건비를 산정하였음
- 직급별·직군별 표준 호봉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상의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에 나타난 호봉으로 같음하였음

<표 6> 직급별·직군별 표준 호봉

1. 일반직 공무원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0호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2. 기능직 공무원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10급		
	18호봉		15호봉		12호봉		기능9급 10호봉		
3. 소방직 공무원	소 준	방 감	소 방 정	소 방 령	소 방 경	소 방 위	소 방 장	소 방 교	소 방 사
	20호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7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 이에 따른 직급별·직군별 공무원 1인당 연간 인건비 표준액은 다음 표와 같음

<표 7> 일반직 공무원 1인당 연간 인건비 표준액

(단위: 천원)

구 분	5급 (18)	6급 (18)	7급 (15)	8급 (12)	9급 (10)
계(년간소요액)	56,974	48,658	42,071	35,306	30,725
기본급	30,429	26,061	21,957	18,117	15,205
수 당	8,377	7,401	6,706	5,826	5,299
정근수당	2,535	2,171	1,829	1,509	1,267
정근수당가산금	960	960	960	720	720
가족수당(배우자)	360	360	360	360	360
가족수당(가족)	480	480	480	480	480
초과근무수당	4,041	3,429	3,076	2,756	2,475
정액급식비	1,560	1,560	1,560	1,560	1,560
교통보조비	1,680	1,560	1,560	1,440	1,440
명절휴가비	3,042	2,606	2,195	1,811	1,520
가계지원비	5,081	4,352	3,666	3,025	2,539
연가보상비	1,267	1,085	914	754	633
직급보조비	3,000	1,860	1,680	1,260	1,260
성과상여금	2,535	2,171	1,829	1,509	1,267

<표 8> 기능직 공무원 1인당 연간 인건비 표준액

(단위: 천원)

구분	6급 (18)	7급 (15)	8급 (12)	9급 (10)	10급 (10)
계(년간소요액)	48,604	42,022	35,263	30,686	28,523
기본급	26,061	21,957	18,117	15,205	13,756
수당	7,346	6,658	5,783	5,260	5,028
정근수당	2,171	1,829	1,509	1,267	1,267
정근수당가산금	960	960	720	720	720
가족수당 (배우자)	360	360	360	360	360
가족수당(가족)	480	480	480	480	480
초과근무수당	3,375	3,028	2,713	2,433	2,201
정액급식비	1,560	1,560	1,560	1,560	1,560
교통보조비	1,560	1,560	1,440	1,440	1,440
명절휴가비	2,606	2,195	1,811	1,520	1,520
가계지원비	4,352	3,666	3,025	2,539	2,297
연가보상비	1,085	914	754	633	633
직급보조비	1,860	1,680	1,260	1,260	1,140
성과상여금	2,171	1,829	1,509	1,267	1,146

<표 9> 소방직 공무원 1인당 연간 인건비 표준액

(단위: 천원)

구 분	소방경 (18)	소방위 (17)	소방장 (15)	소방교 (12)	소방사 (10)
계(년간소요액)	52,030	47,285	41,967	35,982	32,028
기 본 급	27,868	25,058	21,886	18,577	16,090
수 당	8,043	7,340	6,694	5,901	5,443
정근수당	2,535	2,171	1,829	1,509	1,267
정근수당가산금	960	960	960	720	720
가족수당(배우자)	360	360	360	360	360
가족수당(가족)	480	480	480	480	480
초과근무수당	3,708	3,368	3,065	2,831	2,616
정액급식비	1,560	1,560	1,560	1,560	1,560
교통보조비	1,560	1,560	1,560	1,440	1,440
명절휴가비	2,786	2,505	2,188	1,857	1,609
가계지원비	4,654	4,184	3,655	3,102	2,687
연가보상비	1,161	1,044	911	774	670
직급보조비	1,860	1,860	1,680	1,260	1,260
성과상여금	2,535	2,171	1,829	1,509	1,267

<표 10> 무기계약근로자 등급별 1인당 연간 인건비 표준액

(단위: 천원)

구 분	A	F	K	P	U	Z
계(년간소요액)	15,365	17,546	19,428	21,311	23,193	25,075
기본급	8,146	9,822	11,268	12,714	14,160	15,606
처우개선비	147	177	203	229	255	281
급식비	1,440	1,440	1,440	1,440	1,440	1,440
교통보조비	1,200	1,200	1,200	1,200	1,200	1,200
명절휴가비	829	1,000	1,147	1,294	1,441	1,589
직무수당	1,800	1,800	1,800	1,800	1,800	1,800
연차수당	354	414	466	517	569	621
연장수당	1,449	1,694	1,905	2,116	2,327	2,539

- 기관위임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 인건비는 해당 기능별 업무량에 따른 총 인건비에서 중앙부처에 대한 보고에 투입된 업무량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함
- 이는 기관위임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원칙적으로 자치사무화 된 기능의 중앙부처 보고 업무는 사라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 보고에 투입된 업무량의 계산 역시 절대적 업무량 방식이 아닌 상대적 업무량 방식에 따라 해당 기능에 투입된 업무량을 100%로 했을 경우 그 중 중앙부처에 대한 보고에 투입된 업무량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조사하는 방식을 택하였음
- 감사에 수반되는 보고는 보고에 투입된 업무량을 계상하는데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기관위임사무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관련 중앙부처로부터의 감사 등 중앙으로부터의 각종 감사가 사라진다고 해도 이는 다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의 감사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야기할 것이기 때문임

(2) 경상비 산정기준

- 경상비는 해당업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산출하기 위한 것임
- 경상비를 산출하는 방법은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지(직접적 조사방식) 아니면 업무량을 기준으로 하는지(간접적 조사방식)에 따라 구분될 수 있음
- 먼저 예산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은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무량이 어느 정도 증가하였고 그 정도가 해당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가를 고려하는 것이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산출한 값을 해당 부서의 경상비 예산액에 곱하는 방식임

- 즉, 특정 부서의 경상예산에서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음

해당 기능의 경상비 = 부서의 경상비 예산액 × 기능사무의 부서비중 ×
기능사무이양에 따른 사무량 증감률

<표 11> 예산을 기준으로 경상비 산정시의 분석표

기능 사무명	기능 사무 부서 비중	부서의 '07경상비 예산액	기능사무 이양에 따른 사무량 증감 내역				경상비 소요액 (천원)	
			사무의 종류	'06년 처리건수 (월평균)	'07년 처리건수 (월평균)	'08년 처리건수 (월평균, 추정치)		년평균 증감률 (%)
00000사무	%	천원	소 계					
			1. 조례 등 입법사무				공	공
			2. 사업지침/계획					
			3. 사업집행관리					
			4. 상급기관 승인보고					
			5. 인허가등 행위/처분				란	란
			6. 지도점검					
			7. 민원상담					
			8. 현장관리/출장					
			9. 내부보고					
10. 기타 행정처리								

- 또 다른 방법은 해당 기관위임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상비를 직접 조사하기 보다는 해당 기관위임사무의 업무량 비율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방식임
- 이는 경상비의 성격상 해당 기관위임사무에 투입되는 비용을 정확하게 조사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며 이 때, 경상비에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재료비가 포함됨
- 본 연구에서는 직접적 조사방식은 당해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을 구분하고 각 과정별 소요시간 등을 추론하는 방식이나 현실적으로 모든 사무에 대하여 각 과정을 추출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접적 방식에 의해 경상비를 산출하고자 하며 이 경우 경상비를 산정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음
- 먼저, 기관위임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총 경상비를 조사표를 통해 조사하였음
 - 그 다음, 해당 기관위임사무 수행에 소요된 인력에 대한 부서 총 인원의 비율을 산출⁷⁾
 - 마지막으로 부서의 총 경상비에 이렇게 산출된 소요인력비율을 곱하여 경상비를 추계
-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text{기관위임사무별 경상비} = \frac{\text{기관위임사무별 업무량}}{\frac{100}{\text{부서의 총 인원}}} \times \text{부서별 경상비}$$

7) 제3장에서 조사된 업무량은 1인이 1년간 근무한 업무량이 100이라고 할 경우를 가정하여 산출된 것이므로, 해당 기관위임사무 수행에 소요된 인력은 조사된 업무량을 100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표 12> 간접적 경상비 조사표(예시)

※ 부서의 '08년 결산기준 작성

○ 경상비 예산에 포함되는 경비 = 일반운영비 + 여비 + 업무추진비 + 직무수행경비 + 재료비

주의! 부서의 경상비 총 결산액은 해당 기능을 수행하데 소요되는 경상비를 적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의 전체 경상비를 기재

연 번	기능명	소속 국, 과	과장 성명 (연락처)	부서의 '08년 경상비 총 결산액 (단위: 천원)
1	지정폐기물, 의료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무			
2	수질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무			
3	유독물 영업에 관한 사무			
4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무			
5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에 대한 사무			
6	수도사업자에 대한 인가 등에 관한 사무			
7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8	공공하수도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에 관한 권한			
9	환경범죄단속에 관한 사무			
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에 관한 사무			
1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 과태료의 부과·징수			
12	순환골재의 사용에 관한 권고 및 시정조치에 관한 권한			
13	철도차량운행안전 및 철도보호에 관한 사무			
14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및 실효고시			
15	건축사업무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3) 사업비 산정 방법

- 사업비는 당해 사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직접 경비로서 현행 예산체계에
서 산출되는 것도 있으며 일부는 산출되지 않는 사무도 있음
- 따라서 당해 사무를 수행하고 있는 주된 실무자로 하여금 조사표를 통해 작
성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사업비 조사표는 다음과 같음

<표 13> 사업비 조사표(예시)

기능명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 (환경부-2)
-----	-----------------------------------

※ 위 기능이 예산 사업일 경우에만 아래 표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원)

구 분	'06년(결산기준)	'07년(결산기준)	'08년(결산기준)
총사업비			
국비			
균특회계			
분권교부세			
지방비			
기금			
국가기금			
시도기금			
기타()			

2. 조사설계 및 인력 산정

가. 조사설계

- 수행기간 : '09. 11 ~ '10. 3월 5일 (2차 조사: 11~12월, 1월~2월)
- 수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조사대상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20곳
 - 6개 시·도(광역자치단체) : 인구, 면적, 기초자치단체 수, 공무원 수, 본청 공무원 수 등을 변수로 하여 14개 시·도 비교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대표 지역 5곳 선정 및 사무내용상 제주특별자치(일부)와 부산(일부)도 포함하여 총 7곳
- ※ 서울특별시, 대구광역시, 경기도, 충청남도, 경상남도, 부산, 제주특별자치도
 - 13개 기초자치단체 : 인구별 구분에 따라서 자치구, 50만 이상 일반시, 50만 미만 일반시와 지역특성에 따라 도농복합도시, 군으로 구분하였음
- ※ 시·도 내에서 소재하고 있는 시·군·구를 대표할 수 있는 지역
- 실태조사기관 종합: 20개 시도·시군구 자치단체

구분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시	군	구
특별시	서울시		-	영등포구
광역시	대구시	-	달성군	수성구
	부산시			
특별도	제주특별자치도			
도	경기도	부천시, 구리시, 파주시	연천군	
	충청남도	천안시, 논산시	홍성군	
	경상남도	진해시, 김해시	하동군	

<표 14> 비용산정 대상사무 분야

○ 비용산정 대상 기관위임사무

- 광역자치단체(시·도)별 기관위임사무 분야(부록: 사무목록 참조)

중앙행정기관	기관위임사무 관련 분야
국토해양부장관	물류 및 교통, 하천, 시설물안전, 공유수면, 항구, 주택, 산업
농수산식품부 장관	농지, 농산물유통, 농업기반, 농수산보조, 어업, 농업연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건의료, 복지법인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 전자정부, 지방행정
지식경제부장관	에너지 및 산업
환경부장관	환경보호
문화관광체육부장관	문화출판
여성부장관	여성
통일부장관	북한주민
산림청장	산림
소방방재청장	소방
문화재청장	문화재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
통계청장	통계
특허청장	보조금, 경제자유구역, 소비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국유재산

- 기초자치단체(시·군·구)별 기관위임사무 분야(부록: 사무목록 참조)

중앙행정기관	기관위임사무 관련분야
복권위원회	복권
국토해양부장관	국토해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산물
	수산물
산림청장	산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보건
환경부장관	환경
여성부장관	여성복지
통일부장관	북한주민
중앙관서의 장	보조금
관리청	국유재산
지식경제부	산업단지

- 부산광역시 : 부산어패류조합, 부산항만 분야
- 제주특별자치도 : 보훈, 산림 분야
- 기관위임사무 중 지방자치단체에 행·재정 지원실태 조사
 - 근거법령 및 위임대상 기능사무(각 조문별 확인) 검토
 - 현행 기관위임사무 수행에 따른 자치단체 소요인력 검토
 - 현행 기관위임사무에 대한 사업비 지원실태 분석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방안 강구
 - 기능사무 일괄이양시, 추가 소요인력 산정 등 지원방안 제시
 - 기능사무 일괄이양에 따른 사무처리 관련 직·간접 소요경비(국고보조금, 교부금 등) 지원방안 제시
- 조사방법
 - 단위사무 업무량 조사 :
 - 단위사무 사업비 조사(예산사업의 경우)
 - 단위사무별 업무담당자
 - 소기능별(단위사무 묶음) 경상비 조사
 - 기관위임사무를 담당하는 담당자 및 해당부서에서 조사표를 직접 작성
 - 조사된 결과를 토대로 정밀 점검 및 2차 보완 작업 실시

나. 인력 추정⁸⁾

(1) 지방자치단체 선정

(가) 광역자치단체

- 특별시·광역시와 도 지역이 갖고 있는 행정수요가 상이함에 따라 기관위임 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인력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여 특별시·광역시와 도 지역을 분리하여 표본 조사대상 지역을 선정
- 특별시·광역시 지역의 경우, 서울특별시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광역시와 별개로 서울특별시를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으며, 광역시의 경우 6개 광역시 중 가장 대표적인 광역시를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
- 대표 광역시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광역시의 인구, 면적, 산하 자치구·군의 수, 광역시의 공무원 수, 광역시 및 산하 자치구·군의 전체 공무원 수를 지표로 하였으며, 각 지표값에 대한 Z 값의 절대치를 산출한 후 다시 5개 지표에 대한 Z 값 절대치의 평균을 도출. 이렇게 도출된 각 광역시별 평균이 0에 가까울수록 가장 평균적인 광역시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구광역시를 표본조사 대상 광역시로 선정
- 도 지역의 경우, 9개 도 중 경기도는 그 인구 규모가 여타 도와 크게 차이가 나므로 나머지 도지역과 별개로 표본조사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고, 나머지 8개 도 중 대표 광역시 선정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대표 도를 선정
- 경기도를 제외한 8개도를 대상으로 5개 지표에 대한 Z 값의 절대치를 산출해 그 평균이 가장 0에 가까운 충청남도를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

8) 자치단체 선정과 인력 추정은 2009년 3월 지방분권지원단에서 실시한 연구¹⁾(이후 1차연구로 칭함)와 동일한 연구방법 및 연구대상을 선택함. 동 연구는 행정안전부 분권추진단에서 한국지방정부학회에 의뢰하여 추진한 연구임(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방안 연구, 2009. 5).

- 경기도를 포함한 9개도를 대상으로 5개 지표에 대한 Z 값의 절대치를 산출하여 그 평균이 가장 0에 가까운 경상남도를 추가로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

(나) 기초자치단체

- 표본조사 대상 지역으로 선정된 5개 시·도에 대해서 다시 산하 시, 군, 자치구 중 대표가 되는 곳을 표본조사 대상 지역으로 선정
- 대표 시군구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인구, 면적, 공무원 수의 3개 지표를 사용
- 시의 경우, 인구 규모와 도시의 성격에 따라 행정수요가 상이함을 감안하여, 인구 50만 이상의 시, 인구 50만 이하의 일반시, 인구 50만 이하의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구분하여 유형별로 각각 1곳씩 조사대상지역을 선정
- 광역시 산하의 군은 자치구와 행정수요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
- 군의 경우에는 시에 비해 인구 규모나 지역의 성격에 큰 차이가 없으므로 별도의 유형구분 없이 조사대상 도별로 1곳의 군을 표본조사 대상 지역으로 선정

(2) 전체 소요인력 추계 방법

- 지방이양 대상 기관위임사무 수행에 따른 소요인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표본조사 대상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 전체, 기초자치단체 전체, 광역과 기초지자체 전체에 대한 데이터를 추계
- 소요인력 전체를 추계하는 방법 역시 1차 연구와 동일하게 추정함
 - 특별시·광역시 전체의 소요 인력 = 서울특별시의 소요 인력 + (대구광역시
의 소요 인력 × 6)

- 도 전체(제주도 제외)의 소요 인력 = 경기도의 소요 인력 + (충청남도의 소요 인력 + 경상남도의 소요 인력 + (충청남도의 소요 인력과 경상남도의 소요 인력의 평균) × 6
-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기초자치단체 전체의 소요 인력의 추계는 위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각 유형별로 산출된 광역자치단체의 대표 기초자치단체의 소요 인력에 각 광역자치단체의 유형별 기초자치단체의 수를 곱하여 산출
- 서울특별시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소요 인력 = 영등포구의 소요 인력 × 25
- 부산광역시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소요 인력 = 사상구의 소요 인력 × 15 + 기장군의 소요 인력
- 대구광역시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소요 인력 = 수성구의 소요 인력 × 7 + 달성군의 소요 인력
- 인천광역시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소요 인력 = 계양구의 소요 인력 × 8 + 강화군의 소요 인력 + 옹진군의 소요 인력
- 광주광역시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소요 인력 = 서구의 소요 인력 × 5
- 대전광역시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소요 인력 = 동구의 소요 인력 × 5
- 울산광역시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소요 인력 = 중구의 소요 인력 × 4 + 울주군의 소요 인력
- 경기도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소요 인력 = 부천시의 소요 인력 × 7 + 구리시의 소요 인력 × 10 + 파주시의 소요 인력 × 10 + 연천군의 소요 인력 × 4
- 강원도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소요 인력 = 동해시의 소요 인력 × 3 + 강릉시의 소요 인력 × 4 + 영월군의 소요 인력 × 11

- 충청북도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소요 인력 = 청주시의 소요 인력 + 충주시의 소요 인력 + 제천시 소요 인력 + 옥천군의 소요 인력 × 9
 - 충청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소요 인력 = 천안시의 소요 인력 + 논산시의 소요 인력 × 6 + 홍성군의 소요 인력 × 9
 - 경상북도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소요 인력 = 김천시의 소요 인력 × 10 + 영덕군의 소요 인력 × 13
 - 경상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소요 인력 = 진해시의 소요 인력 + 김해시의 소요 인력 × 8 + 하동군의 소요 인력 × 10
 - 전라북도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소요 인력 = 전주시의 소요 인력 + 김제시의 소요 인력 × 5 + 임실군의 소요 인력 × 8
 - 전라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의 소요 인력 = 목포시의 소요 인력 + 나주시의 소요 인력 × 4 + 보성군의 소요 인력 × 17
- 1차 연구에서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유형별 대표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공무원 수의 3개 지표에 대한 Z 값의 평균을 구한 후 이에 대한 Z 분포 상의 면적을 구하고, 다시 표본조사 지역과 여타 지역과의 면적 비율을 구하여 실제 조사되지 않은 기초자치단체의 소요 인력에 대한 추정

<표 15> 광역시 산하 군 소요인력 추정 계수

구분	대구 달성군	부산 기장군	인천 강화군	인천 옹진군	울산 울주군
Z 값의 평균	0.82	-0.39	0.24	-1.18	0.99
Z 분포상의 면적	0.79	0.35	0.41	0.12	0.84
대구 달성군에 대한 비율		0.44	0.51	0.15	1.06

3. 비용산정 결과

- 행·재정 (인건비, 경상비) 비용추계 대상 기관위임사무
 - 기관위임사무 현황: 147개 기능 676건(교육사무 제외, 부록참조)
 - 기관위임사무의 지방이양 : 국가에서 시도로 494건
 - 기관위임사무의 지방이양 : 국가· 시도에서 시군구로 91건
 - 제주특별자치도 이양 : 77건
 - 부산광역시로 이양 : 14건
- 행·재정 비용추계 표본 지방자치단체(20개) 비용추계 결과

<표 16> 조사대상 광역-기초자치단체별 인건비/경상비 비용추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인건비	경상비	계
총소요비용 추계	15,158,775	14,652,431	29,811,206
서울시	1,416,666	11,143,612	12,560,277
대구시	1,035,113	674,793	1,709,905
부산시(일부)	22,875	8,545	31,419
천안시	459,051	20,058	479,110
부천시	186,566	13,546	200,112
김해시	338,315	2,159	340,474
진해시	576,557	233,586	810,144
구리시	180,703	24,547	205,250
논산시	611,545	32,296	643,840
파주시	300,755	4,433	305,188
경기도	1,515,087	695,489	2,210,576
충청남도	2,453,511	8,541	2,462,051
경상남도	1,929,241	339,155	2,268,396
영등포구	502,729	77,706	580,435
달성군	2,184,528	102,926	2,287,454
수성구	203,568	69,700	273,267
연천군	478,103	292,216	770,319
하동군	347,365	878,187	1,225,552
홍성군	129,685	494	130,178
제주도(일부)	286,812	30,444	317,256

○ 조사대상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행·재정 비용추계(사업비 제외) 총합

<표 17> 지방자치단체별 소요비용 추계 상황

(단위 : 천원)

구분		비용	
특별시·광역시 전체의 비용		22,819,710	
도 전체(제주도 제외)의 비용		21,132,363	
관할지별 기초 자치 단체의 비용	특별시 및 광역시 관할지	서울특별시	14,510,873
		부산광역시	21,198,023
		대구광역시	25,423,704
		인천광역시	22,858,111
		대전광역시	17,877,846
		광주광역시	17,877,846
		울산광역시	4,900,640
	도 관할지	경기도	9,586,443
		강원도	1,519,357
		충청북도	4,432,966
		충청남도	2,616,877
		전라북도	27,858,080
		전라남도	15,404,061
		경상북도	37,259,635
		경상남도	779,477

<표 18> 지방자치단체 총소요비용(사업비 제외) 추계 결과

구분	총소요비용 (천원)
시도·시군구 전체의 비용	268,056,012
특별시·광역시 전체의 비용	22,819,710
도 전체(제주도 제외)의 비용	21,132,363
기초자치단체 전체의 비용	224,103,939
특별·광역시 관할지 기초자치단체의 비용	124,647,043
도 관할지 기초자치단체의 비용	99,456,896

○ 20개 조사대상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업비 추계

- 사업비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관위임사무를 수행하지 않는 사업들이 발생할 수 있음. 예를 들면, 공유수면 매립지 관련 사무, 쌀보전 직불금 지급사무, 에너지 관련 지방보급사업 등
- 또한 기관위임사무의 성격상 사업비 등 예산 소요가 없는 사무들도 있음. 예를 들면, 법인관리 등 비예산 사무, 위탁사무의 수수료 승인, 보조사업에 대한 감사 및 인허가 사무, 농지전용 취소 등의 사무

<표 19> 조사대상 광역-기초자치단체별(20개) 사업비 추계

구분	사업비
총 사업비 추계	31,371,131,993
서울시	3,761,969,000
대구시	359,290,970
부산시(일부)	21,000,000
천안시	29,116,230
부천시	21,125,000
김해시	85,727,494
진해시	-
구리시	335,829,750
논산시	84,383,000
파주시	939,559,000
경기도	290,878,863
충청남도	249,284,910
경상남도 (*)	9,089,846,893
영등포구	19,426,000
달성군	2,796,033,000
수성구	155,659,000
연천군	30,403,883
하동군	5,609,228,000
홍성군	7,364,988,000
제주도(일부)	127,383,000

- 경상남도의 경우 특정 관련사업에 약 847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예를 들면, 에너지 관련 지방보급사업에 약 340억이 소요되었으며(국비 200억, 지방비 100억, 기타), 연안업 폐업지원금으로는 국비에 의해 410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따라서 이러한 특정사업에 관련된 기관위임사무 소요비용과 비예산 사업적 특성을 가진 기관위임사무 등에 관한 소요비용 등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시도는 평균 5억, 시군구는 평균 1억 수준의 사업비 소요로 추측됨

○ 결론적으로 기관위임사무 관련 총소요비용 결과는,

- 시도·시군구 전체 인건비 + 경상비 = 268,056,012,000원 (약2,680억원)

- 시도·시군구 사업비 평균 비용 = (5억×16)+(1억×230) = 31,000,000,000원

- 시도·시군구의 기관위임사무 수행 총소요비용: 인건비+경상비+사업비

총계: 299,056,012,000원 (약 3,000억원)

※ 사업비 경우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성을 달리하기 때문에 총계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이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한 재원이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비용추계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4. 비용산정 방법 및 조사결과의 한계

가. 조사표에 의한 재정규모 산정의 문제점

○ 특별시, 광역시, 도, 시·군·구 등 20개 자치단체에 조사표를 발송하여 인건비, 업무량, 경상비, 사업비 등을 파악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 발견

○ 업무량

- 소기능 분류 작업에 대한 업무량 자료가 다소 주관적이기 때문에 일반화하여 총체적인 업무량 산정의 객관성이 결여됨
- 특히 1개 업무처리를 다수가 수행할 경우 업무량 산정의 정확성 결여
- 또한 기능에 따라 광역사무임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위임받아 수행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구분할 필요가 있음

○ 경상비

- 기능에 따른 경상비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사무들이 있으며, 특히 기능에 대한 업무량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경상비 산정에 애로가 있음

○ 사업비

- 일부를 제외하고 기능별로 국비, 균형발전특별회계, 분권교부세, 지방비, 기금 등이 구분되어 있지 않아 총사업비 산정이 어려움

나. 행재정 비용추계를 위한 대안

- 본 연구는 20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표를 통해 재정지원 규모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조사표의 부정확성, 주관적 판단, 기재 부재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재정지원규모의 오차가 클 수 있음
- 특히, 기능별로 국비, 균형발전특별회계, 분권교부세, 지방비, 기금 등에 대한 규모가 파악되지 않아 총 재정지원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움
- 따라서 본 연구는 조사표 결과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사업비를 제외한 인건비와 경상비 규모를 파악하였으며, 사업비를 포함한 총재정지원 규모 산정은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봄
- 결과적으로 아래에 제시한 재정지원 방안은 현행 정부간 재정제도 하에서 기능이양과 관련하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지방소비세, 포괄보조금 등의 대안을 검토한 것임

제 4 장 위임사무 폐지에 따른 행·재정지원 방안

제1절 행·재정지원 기본방향

1. 행·재정지원 방향

○ 지방이양에 따른 행·재정 지원 및 비용부담 명확화

- 이양된 사무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사무배분 이양 시 사전평가의 대상이 되도록 하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을 규정할 때 이와 함께 반드시 사무이양 추진절차와 이양 후 행정기관의 재산처분, 인력 등 정리절차에 대한 규정도 함께 제정되었는지 확인하는 조치(법률상 경과규정 등)가 구체적으로 실천되어야 할 것임
- 행정권한 이양 시 재원의 보전은 이양된 권한과 새로운 권한의 배분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할 것임. 따라서 지출비용의 증가와 감소에 대한 지출결과를 결정할 수 있는 총괄지원 안을 세워 이 결과에 따라서 세제수입과 교부금을 통한 재정지원 등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법 등 지원방안을 반드시 법령 개정에 포함시키도록 한다면 관련 법규정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비용은 신규 자치사무를 실제 수행하여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산출하는 방안이 효과적임.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상 대분

9) 참조 : 조소연,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 및 인력조치, 자치행정, 1999. 8월호, p.39 ; 김재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성과와 지방이양 촉진방안, 지방분권을 위한 입법과제, 법제처, 2003, p.43 ; 조정찬, 지방경비의 부담체계에 관한 고찰: 보조금제도를 중심으로, 지방분권을 위한 입법과제, 법제처, 2003, p.111~137.

류인 인건비, 경상사업비, 투자사업비로 구분하여 산정하되, 지방이양에 따른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경비를 먼저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간접적이고 부차적인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을 활용할 수도 있고,

- 또는 이양되는 단위사무의 집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하나하나 산출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원가계산 방법도 있음. 그리고 비교적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지방교부세 중 법정 외로 운영되고 있는 증액교부금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음. 이는 지방이양 완료 후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의한 증액교부금 등을 통한 재정지원이 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이 필요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명문화가 가능함
- 또는 사무이양에 따른 특별교부세, 포괄보조금제도의 신설에 의한 재정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음. 지방이양사무의 수행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 법령에 근거하여 징수가 가능한 재정증대를 초래할 경우, 수입의 징수비율을 사무수행 주체와 배분, 조정함으로써 필요 재원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수수료 등의 요율을 종목별 원가분석 내용을 기초로 하여 현실화하여야 함(지방세외수입업무편람 등 참조).
- 원처분권과 과태료, 과징금 부과권은 별개의 권한이지만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같은 기관이 행사할 필요가 있음. 필요인력의 조치는, 공무원 인력의 배분조치와 관련이 없다면 자치단체가 채택한 총액인건비제도 한도에서 자율적으로 인력활용을 하도록 규정하면 될 것임

2. 재정지원 기본방향

가. 지원재원의 요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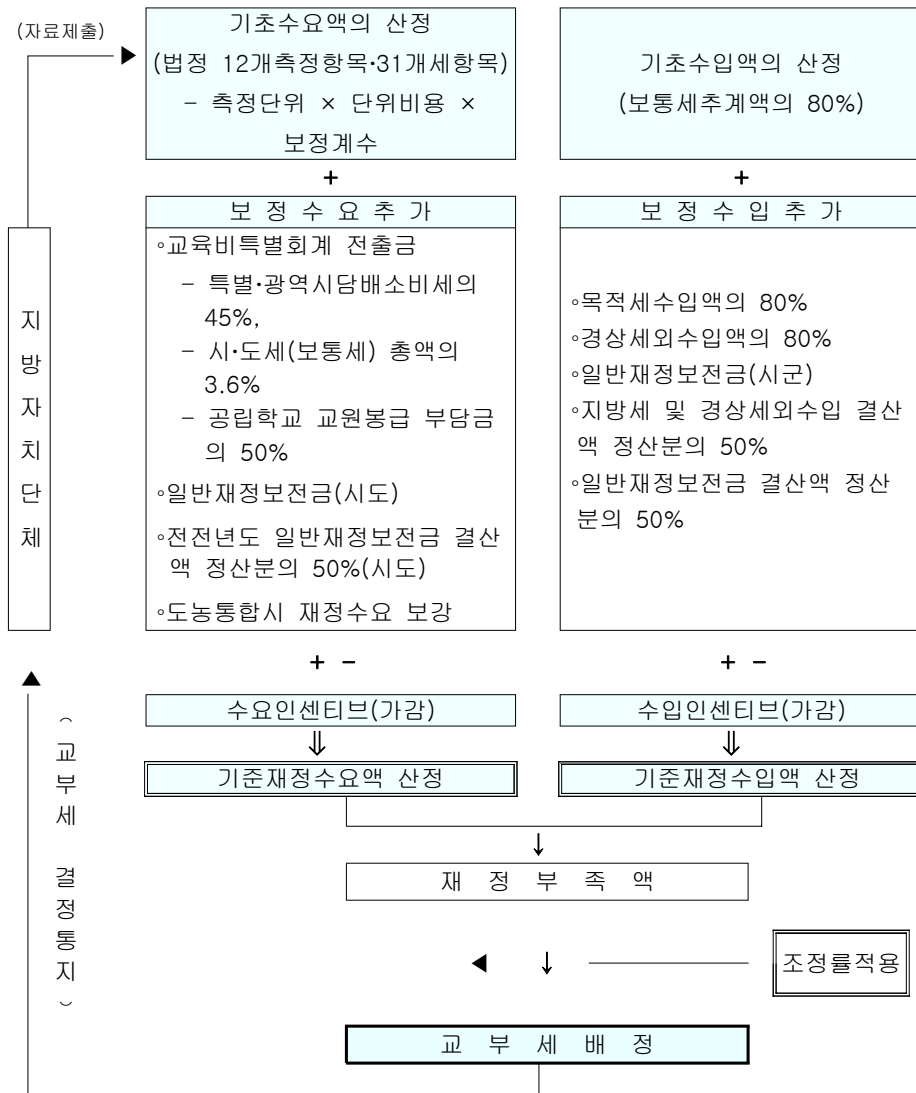
- 위임사무의 지방이전과 관련된 재원지원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전제가 필요함

- 첫째,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위임사무는 중앙정부의 사무로써 이에 소요는 재원 역시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지원하고 있었음. 따라서 동 사무가 지방으로 이전될 경우 중앙정부의 재원에서 이를 보전하는 것이 필요함
- 둘째, 재정지원의 충분성, 위임사무가 지방에서 추진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열악성으로 인해 사무이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이 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사무이행에 소요되는 직접비 외에도 인건비와 같은 간접비에 대한 재정지원도 고려되어야 함
- 셋째, 지원재원의 특정성, 사무이양에 따른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지원되는 재원이 사무이양에 소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일반재원으로 지원할 경우 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라 타 사업에 지출될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될 경우 지방으로 이양된 기관위임사무의 안정적 수행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임. 다만 재원을 이양되는 기관위임 사무에 만 사용하도록 통제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에 경직성을 초래할 수도 있으므로 일반재원의 성격과 특정재원의 성격을 가미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와 관련하여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은 지방교부세 제도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중 보정계수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음
- 넷째, 재원의 안정성, 위임사무의 이양은 동 사무가 존재하는 한 지속적으로 재원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지방으로 이전되는 재원 역시 지속적·안정적인 재원이 되어야 할 것임

나. 보통교부세 상향지원의 당위성

- 기능이양에 따른 재정지원 방안 중 우선적으로 고려해 볼만한 방법은 지방교부세를 활용하는 방안임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기능이양으로 인한 재정수요 증대분을 지방교부세로 보전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는 것이 목적(법 제1조)

<그림 1>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 산정의 흐름도



- 재원의 균형화(재정조정기능):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재정균형화를 도모

- 재원의 보장(재원보장기능): 기준재정수요액, 기준재정수입액이라는 기준설정을 통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의 계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재원(일반재원)을 보장
- 이에 근거하여 사무증대로 인해 재정수요가 유발될 경우, 지방교부세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재원보장 및 재정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나. 특별교부세 활용 개관

-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획일성과 시기적인 일회성으로 인하여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교부하는 재원임
 - 보통교부세의 기능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적으로 구체성과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재정지원제도임
- 특별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교부함
 -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 보통교부세의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은 지역현안수요, 재해대책수요 등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운영하되, 재해대책수요 잔여액 예상분은 우수자치단체 재정지원에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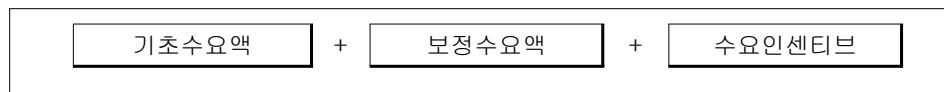
- 지역현안수요의 산정항목은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국가행사 또는 행정구역개편 등으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 지방공공시설의 신설·복구·확장 등으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임
- 재해대책수요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일 후에 발생한 재해 등으로 인한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한 자치단체 중 자체재원으로 응급·항구복구에 따른 사업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자치단체의 응급복구수요와 항구복구수요임

제2절 재정지원 방안

1. 지방이전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

가. 보통교부세 지원방안

- 재정수요는 결국 지방교부세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반영여부와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음
-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에 있어서도 특히 기초수요액 산정에 직접 관련이 있고 부수적으로 보정수요액과 관련을 가질 수도 있음
 - 기준재정수요액의 의미: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합리적이고 적정한 기본행정 수준을 유지하는 데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재정수요로서 각 지방 자치단체가 실제 지출하고자 하는 경비의 실적치가 아니라, 자치단체별 자연적·지리적·사회적 제반여건에 대응하는 합리적이고도 타당한 수준의 「표준적인 재정수요」를 의미함



- 기초수요액

$$\text{항목별 측정단위수치} \times \text{단위비용} \times \text{보정계수}$$

- 측정항목 : 기준재정수요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기능별·성질별로 표준분류 설정한 재정수요항목을 말함
- 측정단위 : 수요측정항목별 지방재정수요를 합리적·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단위를 말함
- 단위비용 :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각 측정단위별 1단위당 수치에 적용되는 표준적인 단가를 말함
- 보정계수 : 기준재정수요액을 자치단체별 환경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측정단위수치×표준단위비용」만으로 일률 산정하면 표준적인 행정수요액 보다 과다·과소 산정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게 되어 자치단체의 사회적·자연적 조건의 차에 의한 경비 등의 차를 가감반영하는 것을 말함

$$\text{※ 보정계수} = \frac{\text{당해단체의 단위비용(표준행정수요액+지역균형수요액 / 측정단위수치)}}{\text{동종단체의 표준단위비용}}$$

- 이러한 지방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 방식중에서 위임사무의 증대로 인한 재정수요 증대분은 보정계수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보정계수는 지방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지역의 특수적 재정수요 유발에 대해 보전하기 위한 수단이므로 전체 보정계수중 당해 위임사무와 관련있는 측정항목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 판단됨
- 이는 기준재정수요액의 기초수요액 산정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보정수요에 반영하는 것으로 타 자치단체의 지방교부세 배분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반발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라 할 수 있음

<표 20> 측정항목별 보정계수 산정공식

측정항목		보정계수산식
1. 입법 및 선거 관리비	(1) 의회비	(당해 자치단체 의회비 표준행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지방의원수) ÷ 의회비 단위비용
	(2) 선거비	(당해 자치단체 선거비 표준행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선거구수) ÷ 선거비 단위비용
2. 일반 행정비	(1) 인건비	(당해 자치단체 인건비 표준행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지방공무원수) ÷ 인건비 단위비용
	(2) 일반관리비	(당해 자치단체 일반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인구수) ÷ 일반관리비 단위비용
	(3) 행정정보화비	(당해 자치단체 행정정보화비 표준행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가구수) ÷ 행정정보화비 단위비용
	(4) 읍면동비	{(당해 자치단체 읍면동비 표준행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읍면동비 지역균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통리수} ÷ 읍면동비 단위비용
	(5) 징세비	(당해 자치단체 징세비 표준행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가구수) ÷ 징세비 단위비용
3. 교육 및 문화비	(1) 문화체육비	(당해 자치단체 문화체육비 표준행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인구수) ÷ 문화체육비 단위비용
	(2) 홍보비	{(당해 자치단체 홍보비 표준행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홍보비 지역균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인구수} ÷ 홍보비 단위비용
4. 보건 및 생활 환경 개선비	(1) 보건위생비	{(당해 자치단체 보건위생비 표준행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보건위생비 지역균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인구수} ÷ 보건위생비 단위비용
	(2) 청소비	{(당해 자치단체 청소비 표준행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청소비 지역균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가구수} ÷ 청소비 단위비용
	(3) 환경공해비	(당해 자치단체 환경공해비 표준행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인구수) ÷ 환경공해비 단위비용
	(4) 공원녹지비	{(당해 자치단체 공원녹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공원녹지비 지역균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공원면적} ÷ 공원녹지비 단위비용
5. 사회 보장비	(1) 사회복지비	(당해 자치단체 사회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인구수) ÷ 사회복지비 단위비용
	(2) 노인복지비	(당해 자치단체 노인복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노령인구수) ÷ 노인복지비 단위비용
	(3) 기초생활 보장비	(당해 자치단체 기초생활보장비 표준행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수) ÷ 기초생활보장비 단위비용

측정항목		보정계수산식
6.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	(1) 도시계획비	{(당해 자치단체 도시계획비 표준행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도시계획비 지역균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인구수} ÷ 도시계획비 단위비용
	(2) 지역개발비	{(당해 자치단체 지역개발비 표준행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지역개발비 지역균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행정구역면적} ÷ 지역개발비 단위비용
7. 농수산 개발비	(1) 농업비	{(당해 자치단체 농업비 표준행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농업비 지역균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경지면적} ÷ 농업비 단위비용
	(2) 수산비	{(당해 자치단체 수산비 표준행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수산비 지역균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수산업종사자수} ÷ 수산비 단위비용
	(3) 임업비	(당해 자치단체 임업비 표준행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임야면적) ÷ 임업비 단위비용
8. 지역경제 개발비	(1) 지역경제비	{(당해 자치단체 지역경제비 표준행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지역경제비 지역균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사업체 종사자수} ÷ 지역경제비 단위비용
	(2) 관광진흥비	(당해 자치단체 관광진흥비 표준행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인구수) ÷ 관광진흥비 단위비용
9. 국토 자원 보전 개발비	(1) 상수도비	{(당해 자치단체 상수도비 표준행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상수도비 지역균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급수인구수} ÷ 상수도비 단위비용
	(2) 하수도비	(당해 자치단체 하수도비 표준행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인구수) ÷ 하수도비 단위비용
	(3) 도로개량비	{(당해 자치단체 도로개량비 표준행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도로개량비 지역균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미개량도로면적} ÷ 도로개량비 단위비용
	(4) 도로유지비	(당해 자치단체 도로유지비 표준행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개설도로면적) ÷ 도로유지비 단위비용
	(5) 하천비	{(당해 자치단체 하천비 표준행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하천비 지역균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하천의 연장} ÷ 하천비 단위비용
10. 교통관리비	{(당해 자치단체 교통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교통관리비 지역균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자동차대수} ÷ 교통관리비 단위비용	
11. 민방위관리비	(당해 자치단체 민방위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민방위대원수) ÷ 민방위관리비 단위비용	
12. 소방관리비	(당해 자치단체 소방관리비 표준행정수요액 ÷ 당해 자치단체 가구수) ÷ 소방관리비 단위비용	

나. 특별교부세 활용방안

1) 도입가능성 및 방안

- 특별교부세가 보통교부세 산정시 예측하지 못했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위임사무의 재정보전 대안으로는 적절치 않음
- 위임사무에 따른 재정수요 증대는 사전에 예측 가능하기 때문임
- 그러나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의 문제를 보완하는 성격이 있는 바, 보통교부세는 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일반적 재정수요에 대하여 교부하는데 반해 특별교부세는 특정자치단체의 특정재정수요를 대상으로 교부한다는 점에서 위임사무로 인한 재정수요 보전을 위해 사용 가능성이 있음
- 특별교부세는 특정한 산정방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자율성이 어느정도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위임사무에 대한 보전은 정책적 결정으로 가능함
- 다만 위임사무는 일단 이양이 되면 지속적으로 재원이 소요되는데 반해 특별교부세는 매년 정책결정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원의 지속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음
- 따라서 특별교부세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특별교부세 교부대상에 위임사무 이양과 관련된 조항이 포함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지방소득·소비세는 기본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도입된 세원이므로 사무이양 등 일반적인 재정지원을 하게 될 경우 도입 목적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활용이 용이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2) 도입방안 평가

- 특별교부세는 사무이양에 따른 소요재원의 증대를 보전하기 위한 부분에 재정지원이 가능함
- 사업비로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는 원칙적으로 사업 직접경비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부대적 경비로는 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특별교부세를 통해 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을 할 경우, 사무이양에 따른 사업비를 산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해야 한다는 점에서 인건비 및 경상비는 제외될 가능성이 있음
- 그러므로 해당 자치단체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재원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달갑지 않은 방안이 될 수도 있음
- 또 현재 특별교부세가 교부되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재해발생·국가행사 등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수시로 심사를 거쳐 재정지원을 하기 때문에 일회성 재정지원 성격이 강함
- 반면 사무이양은 지속적으로 재정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재정지원은 항구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특별교부세의 기본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그러므로 특별교부세로서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은 보통교부세의 보완적 수단에 그쳐야 할 것으로 판단됨

2. 재정특례를 활용하는 방법

가. 지방소비세 도입시 재정특례 부여

-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하였음

- 지방소비세는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 45조6천억원 중 5%가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권역별 가중치(수도권:100%, 비수도권 광역시:200%, 비수도권 도:300%)를 적용한 민간최종소비지출 비중에 따라 시도에 배분하고, 3년 후 5%가 추가 이양돼 2013년부터는 부가가치세의 총 10%가 지방에 배분될 예정임
- 지방소득세는 2010년부터는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며, 3년간 한시적으로 과표와 세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운영하게 되나 2013년 이후에는 자치단체에 과세자주권을 부여하기로 함
- 따라서 본 재원을 지방에 배분할 때 사무이양에 따른 재정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의 안분기준에 사무이양 분을 포함하는 재정특례의 방법이 있을 수 있음

나. 재정총액 포괄지원제도 도입

- 사무이양에 대한 재원보전 방안중의 하나로 포괄보조금을 상정할 수 있음
- 이 방안은 기존에 위임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할 때 일부 국고보조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다만 각 사무별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재원사용의 융통성이 제약되므로 포괄보조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간에 협약을 통하여 포괄보조규모를 산정하고 그 부족분을 중앙정부가 포괄보조금 형식으로 보전하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제3절 행정적 지원 및 법정비 방안

1. 법정수임사무 도입에 따른 법령 개정방안

○ 기본원칙 명문화

- 국가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관련 법령에서 명시한 내용을 근거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범위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당해 개별법령에 세부내용에 규정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이러한 사항들은 지방이양촉진법 규정에서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 시도의 자치사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도 (위임받은 국가사무를 재위임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마찬가지로 경비부담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하도록 하고, 시도사무는 법령에 근거하여 다시 조례로 위임규정을 신설한 후, 이 모든 위임사무에 대한 소요경비의 전액부담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시도-시군구간 역할분담 등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

○ 지방자치법 개정

-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를 「자치사무」와 「법률에 의한 수임사무」임을 명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항 개정
- 「자치사무」 및 「법률에 의한 수임사무」에 관한 법률적 특성 규정 신설
- 제9조의 2(자치사무), 제9조의 3(법률에 의한 수임사무) 신설
- 위임사무 관련 조문 표현을 「법률에 의한 수임사무」 조문으로 정비

○ 정부조직법 개정

-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규정
- 정부 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항 개정

○ 개별법령 개정

- 시행령의 위임 조항 삭제, 법률에서 「법률에 의한 수입사무」 명시

< 추진체계 >

- 지방분권 총괄기구인 '지방분권촉진위원회'에서 총괄 추진
- 동위원회 소속으로 행정안전부, 법제처, 지방분권촉진위원회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개별 법령 정비를 위한 '법률정비추진단' 구성

2. 이양에 따른 관련 법제 정비안

○ 인사 재배치 및 조직개편

- 이관 기능, 자치단체 기존 조직 등을 고려, 이관 인력규모를 결정
- 자치단체에 이체되는 인력은 지방직 전환을 원칙으로 하되,
- 업무의 전문성·연속성 확보 및 해당 공무원의 신분불안 완화를 위해 국가직 유지(한시적) 및 전보제한 등 조치
- 연고지 우선 근무, 승진 등에서의 차별 방지 등 기타 보완대책은 소관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

※ 채용·보수·복지 등 인사 분야별로 이관대비 필요사항 발굴·조치

- 이관인력 규모·직급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및 지방청 조직을 개편하되, 업무 공백 최소화 및 지역간 균형 등 감안

○ 예산 및 재산 이관

○ 기능·예산 동시 이관을 원칙으로, 안정적·지속적 재원 확보 노력

- '09년 : 전액 국고보조금(국고보조율 100%)

- '10년 이후 : 균형발전특별회계 광역발전계정 세출항목에 특행계정 신설

○ 청사 및 부지 무상임대, 장비·기계 등 물품 무상대부 추진

○ 기구·인력의 효율화 방안

- 동일기능 수행 기관 지역별 과다·분산 설치된 경우 광역화 또는 계층축소

- 감독기능 담당 지방청 폐지, 기존 인력은 대민서비스 분야로 전환배치

○ 규제합리화

- 국가의 간섭 최소화, 지방의 특성있는 발전과 자치역량 향상 도모

※ 「환경성평가제도개선방안」(환경부) : 유사분야 통합, 협의절차 간소화 등

※ 「산지관리제도개선방안」(산림청) : 자치단체 산지전용 허가권한 확대 등

3. 지방이양 후 사후적 보완

○ 후속적 보완조치

-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이양 결정 후 발생된 비용의 모든 순증가액에 대하여 자원 이전을 통해서 보전해야 한다는 법적 후속 조치가 보완되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재정력이 갖추어질 때까지 필요한 일정기간 경상(포괄)교부금 형태로 지원하는 제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프랑스 지방

자치법 제102조 및 사무배분법 제5조와 94조에서 재확인)¹⁰⁾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등과 합동협의회를 정기적으로 마련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함

- 예를 들면, 프랑스는 지방자치법 94조에 사무를 이양한 날로부터 지출과 동일한 총액이 지원되어야 하고, 재정보전은 국가위원회(commission nationale)의 감독 하에서 사실상 총괄적이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한 바 있음¹¹⁾
- 특히 사무이양에 따른 단위사무별 소요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후적 보완조치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무이양 후 재정지원을 하였다고 해도 향후 3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이양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비용의 증감으로부터 발생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총액 운영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재정담당자, 자치단체 대표, 기획예산처 예산관리부서 대표 등이 모인 <사무이양 재정평가위원회>(가칭)를 통해서 사무이양 후 재정지원의 효율성 등을 사후적으로 평가,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재정지원 방안을 개선해 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하도록 유도함

○ 분쟁처리절차 개선

-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도와 관련된 법적 내용을 재검토 요청하는 방법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재심청구 절차를 두고 있는 바, 이와 유사한 방법을 제도화하는 방법도 활용할 수 있음

10) 프랑스 사무배분법 제94조에서, "이양된 사무의 집행에 관한 규칙, 시행령의 수정이 발생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게 초래되는 새로운 모든 비용은, 현 사무배분법 제94조에 명시된 조건에 의해서 보충된다. 그러나 이 보충비용은 98조에 명시된 사무배분총괄교부금의 증가분에 의해서 이미 보상이 이루어진 부분을 제외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하고 있다.

11) décret du 10 mars 1983, modif. notamment par le décret du 17 février 1995.

- 또는 현재 지방자치법 규정하고 있는 국무총리 소속하의 협의조정기구를 활성화한다. 이때 동법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기능 및 협의조정절차’를 중앙부처 중심이 아닌 거버넌스형 위원회로 재구성하여, 현재 법정단체로 인정받고 있는 지방4단체의 대표들이 적극 위원으로 참여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를 대변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부당한 감독권 행사 등에 대한 분쟁처리에 초점을 두고 실무적으로 운영이 상시화 될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보다 유연하게 변화시켜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체제’도 궁극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게 유도함
-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실무위원회’를 활성화 하고, 동 위원회의 심사대상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국가의 감독수단에 대한 실제 이행상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감독수단의 간소화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사전적으로 국가와 자치단체간 갈등 및 분쟁을 방지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을 촉진시켜야 할 것임

○ 법령사전심사 제도화

- 지방분권에 기초한 중앙-지방정부간 관계에서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하여 일방적인 명령, 지시, 통제에 의한 역할분담을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실정법상의 사무배분 원칙과 기준 등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권한의 배분 체계¹²⁾ 내에서 정부간 역할과 그에 따른 책임과 사무의 분담을 추진함
- 국가-지방정부간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권한을 배분하게 되면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어 각 행정기관이 주요 핵심역량에 힘을 집중함으로써 공공부문의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됨

12) 권한배분체계 또는 사무배분체계란 현행 실정법 체계상 중앙-지방정부간 관계를 근간으로 하여 “권리와 의무가 수반되는 권한(사무, 기능)을 배분”하는 원칙과 기준, 방법, 절차 등 사무배분과 관련된 총체적인 구성과 그 관계성을 의미한다.

- 이와 같은 이유로 각 선진국에서는 정부정책의 혁신기조는 기본적으로 지방분권 촉진과 지방정부의 자율권 확대, 그에 따른 책임성 확보 등이 실현되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개발, 운영하고 있음
- 지방분권을 좀 더 가속화시키기 위해서는 직접 국가와 지방에서의 정책과 사업을 주관하고 추진하는 근거가 되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법령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법령의 제·개정(안)을 대상으로 중앙-지방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사무의 구분과 배분의 합리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서 행정비용 감축과 효율성 저하방지 등의 효과를 높여 나가는 것이 중요함
- 즉, 법령 제·개정시 국가-지방자치단체간 적정한 사무배분이 되도록 사전검토 함으로써 장애요인 또는 부정적 사안들을 미리 제거하고 더욱 빠르게 지방분권화가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면 됨
- 지방분권 촉진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의 경우에는 이 제도를 통해서 지방분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들을 찾아내고 이에 대하여 주관부서로서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할 수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책임성을 달성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성도 달성할 수 있음
- 체계적인 법령사전심사제도의 구축을 위해서 기구, 인력설치 등이 필요한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중앙부처 내에서 시행되는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수렴을 어떻게 법령사전심사제도에 동화시킬 수 있는지 등 제도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4. 정책제언

- 지방의 기능이양에 따른 재정지원 방안을 검토한 결과 현행 제도 하에서 현실적으로 국고보조금 또는 포괄보조금 형식의 재정지원이 가장 바람직함
- 참여정부 시절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이 대대적으로 실시되었는데, 그 당시 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른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분권교부세를 통해서 지원되었음
 - 지방양여금의 폐지, 균형발전특별회계 도입도 동시에 진행되었음
- 조사표 결과에도 나타나 있듯이 자치단체별, 기능별 업무량과 사업비를 파악하여 재정지원을 한다는 것은 정확성이 결여되어 또 다른 오차를 범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치단체별 평균적 비용을 산정하여 포괄보조금 형식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부 록

기관위임사무의 소기능별 목록

- I. 기관위임사무 분야별 분류 목록
 - 1. 시도 기관위임사무의 분야별 구분
 - 2. 시군구 기관위임사무의 분야별 구분

- II. 기관위임사무 현황: 147개 기능 731개 단위사무 (엑셀표 참조)
 - 1. 기관위임사무의 지방이양 대상 목록 (국가에서 시도로) 494개
 - 2. 기관위임사무의 지방이양 대상 목록(국가시도에서 시군구로) 91개
 - 3. 제주특별자치도 이양대상 목록 77개

I. 기관위임사무 분야별 분류 목록

1. 시도 기관위임사무 분야별 구분

대분류	소기능 중분류	소기능	원처리권자	현처리권자
물류 및 교통	복합물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사무		
	항공장애시설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 설치·관리		
	해양정도구역	정도구역의 관리 사무		
	일반교통안전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관리 사무		
	해상안전	선박이나 사업장 지도 감독 사무		
	국유재산 도로	도로와 부속시설 관리 사무		
	물류화물자동차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등에 관한 사무		
	자동차운수업	자동차운수사업 관리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 및 청문 등에 관한 사무		시도지사
	여객자동차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사무		
하천	국가하천	국가하천의 정용 허가 등에 관한 사무		
	지방하천	지방하천의 폐천부지 교환 및 양여		
시설물안전	하천선박운행	하천 선박운행허가사무		
	국유재산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및 부속시설의 관리 사무		
	안전진단	시설물 안전진단 관리 사무		
	건설업	건설업 등록관리사무		
	건설기계	건설기계검사사무		
공유수면	공유수면매립	공유수면매립 사무(연안항, 국가어항구역)		

항구	연안항	연안항 항만 시설 관리 사무		
주택	주택대지	주택건설 및 대지조성		
	산업단지개발	국가산업단지의 개발에 관한 사무		
산업	법인관리	비영리법인등 관리 사무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농지	농업기반정비	농업기반정비사업에 관한 사무		
	국가방조제	국가관리방조제의 개수 또는 보수공사의 사업시행인가		
	농어업보전	농어업의 보전제 사무		
	정부관리양곡	정부관리양곡에 대한 판매 및 감독 등에 관한 사무		
	식물방역	방제명령 위반 관리		
	지방도매시장	지방도매시장 관리 사무		
	농산물유통가공	농산물중 누에씨·누에고치의 검사에 관한 사항		
농산물품질	수산물품질	수산물품질관리사무		
	양곡수급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사무		
농업기반	농업기반시설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대한 사무		
	관세감면	관세감면대상물품 중 종마 종양 등 확인사무		
	도시관리계획	농업진흥지역의 도시관리계획사무		
	공유수면매립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협의사무		
	농림법인관리	비영리법인등 관리 사무		
	농산물보조금	농산물 관련 보조금관리사무		
	농지전용	농지전용 협의사무		
	농업공유수면매립지	농업 및 축산업 관련 공유수면매립 사무		
	농수산보조금	보조금의 사용승인 사무		
	어업	어업자원	허가 및 취소 사무	
			농수산식품부 장관	시도지사

농업연구	농업연구관	도농연구관인사 사무		
보건의료	보건의료협력	특정수혈부작용 발생신고의 접수 및 과태료 부과 사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보건광고	광고내용의 변경·금지명령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의 요청 등 사무		
	보건정신요양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및 정실질환자 보호 등에 관한 사무		
	기초생활수급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관리사무		
	임장책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관리사무		
	보건복지	보건복지 관련 비상대비지원관리사무		
	복지정책	복지관련 기증품관리 사무		
	보건복지	국고관리업무 관직 지정 사무		
	보건의약	의약품취급관리 사무		
	보건의료	의료기사관리 사무		
	복지법인관리	비영리법인등 관리 사무		
	사회복지법인	복지법인의 농지취득관리 사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 관리 사무		
지방행정	행정사	행정사의 자격시험실시에 관한 권한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무		
	지방행정인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무		
	지방채	지방채 발행계획의 승인		
전자정부	전자정부사업	전자정부사업 사전협의의 사무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주민등록	주민등록관리 사무		
지방행정	행안부법인	비영리법인등 관리 사무		
	공무원인사	공무원 결원보충 사무		
	행정기관 설치	행정기관의 설치승인 사무		
에너지 및 산업	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에 관한 권한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환경보호	소비세	특별소비세물품증명 사무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지식경제부법인	비영리법인등 관리 사무		
	초지전용	초지전용추천 사무		
	국가기술훈격	국가기술훈격 관리 사무		
	지방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내 국유지 관리 사무		
	자연공원	국립공원 유지·관리 사무		
	대기보전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규제 사무		
	한강수계수질보전	한강수계상수원관리 사무		
	환경부법인	비영리법인 등 관리 사무		
	환경부기술자격	국가기술훈격관리 사무		
문화출판	환경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사무	문화관광체육부장관	시도지사
	생태계보전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 사무		
	강 수계관리	영신강성진강, 금강,낙동강수계 관리 사무		
	도서지역환경	특정도서지역 관리 사무		
	동식물보호구역	동식물 특별보호구역사무		
	출판진흥	출판 관련 과태료 관리사무		
	문광부법인	비영리법인 등 관리 사무		
	문광부 전통사찰	전통사찰의 농지취득관리 사무		
	위안부피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 사무		
	여성부법인	비영리법인등 관리 사무		
북한주민	북한주민보호	북한이탈주민보호, 정착지원 사무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신림조합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의 감사결과관리 사무		
	임업후계	임업후계자 지원 등에 관한 사무		
신림	신림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사무	산림부장관	시도지사
	신림관리	신림관리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무		
여성	여성부법인	비영리법인등 관리 사무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북한주민보호	북한이탈주민보호, 정착지원 사무		
	신림조합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의 감사결과관리 사무		
북한주민	신림조합	임업후계자 지원 등에 관한 사무	통일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신림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사무		
	신림관리	신림관리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무		
신림	신림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사무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신림관리	신림관리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무		

	초지전용	초지조정지구지정 사무		
	신림	국유재산의 관리 사무		
	산림	사유림등의 부동산 매입		
소방	소방시설	소방기구관리 사무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소방인사	소방인력 인사사무		
	방재법인관리	비영리법인등 관리 사무		
문화재	문화재청법인	비영리법인 관리 사무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문화재 보호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사무		
	문화재 보호	매장문화재 발굴 등에 대한 사무		
중소기업	중소기업지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권한	중소기업청장	시도지사
	중소기업사업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사무		
	통계조사	통계조사관리 사무	통계청장	시도지사
보조금	산업특허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사무	특허청장	시도지사
	보조금관리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에 관한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장
	경제자유구역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사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국유재산	소비자안전	물품의 시험,검사 등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무	총괄청	시도지사
	국유재산관리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산어폐류조함	어폐류조함감독 사무	농수산식품부 장관	부산광역시장
부산시	부산항만	부산남항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 허가사무	국토해양부장관	부산광역시장

2. 시군구 기관위임사무 분야별 구분

대분류	소기능 중분류	소기능	원처리권자	원처리권자
복권	복권	복권 및 복권기금관리 사무	복권위원회	시군구청장
	공유수면	공유수면관리 사무		
국토해양	자동차검사	자동차검사 및 방문 등에 관한 사무	국토해양부장관	시군구청장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관리 사무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관리 사무		
	개발제한 및 재건축 부담금	재건축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무 개발부담금 관리 사무		
	후계농업경영인·전입농업인 관리 사무	후계농업경영인·전입농업인 관리 사무		
농산물	환경농업보조금	환경농업보조금관리 사무	농림수산물품부장관	시군·군수
	농지전용허가	농지전용의 허가관리 사무		
	양곡수급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직불제 지급 등에 관한 사무		
	농산물유통가공	쌀소득 직접직불제 지급관리 사무		
수산물	수산물가공	수산물가공업등록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군·군수
	산림 및 백두대간 보호	보조사업의 감사관리 사무 백두대간보호 사무		
보건	암정책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 사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군구청장
	보육교사	보육교사 자격관리 사무		
환경	한강수계보전	한강수계관리 사무	환경부장관	시군·군수
	내륙습지보호	내륙습지의 토지매수 및 손실보상 사무		
여성복지	성매매피해	성매매피해자 지원 사무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북한주민	북한주민보호	북한이탈주민보호·정착지원에 관한 사무	통일부장관	시군구청장
	보조금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에 관한 사무		
국유재산	국유재산관리	국유재산관리 사무	중앙관서의 장 관리청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내 국유지 관리 사무	지식경제부	시군구청장

3. 제주특별자치도 기관위임사무 분야별 구분

분야	소기능	원처리권자	현처리권자
보훈	국가유공자 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국가보훈처장	제주특별자치도 지사
	현충시설 관리에 대한 사무		
	독립유공자 지원 사무		
	참전유공자 지원 사무		
	5.18민주유공자 지원 사무		
	고령제후유증환자지원사무		
	특수임무수행지원 사무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사무		
신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신림청장	

II. 기관위임사무 목록

1. 기관위임사무의 지방이양 대상 목록 (국가 → 시도지사) 494개

분야	연번	소기능	단위사무	근거법령	원처리권자	현처리권자	위임근거법령
복합물류물류	1~15	복합물류터미널사업에 관한 사무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변경등록	물류시설의 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3항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제64조
			공사시행인가·변경인가, 소관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공사시행인가의 고시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제9조1항, 제2항, 제4항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 제2항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사업승계 신고수리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 제2항			
			사업의 휴업·폐업 또는 범인해산 신고수리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제15조 제1항, 제2항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징수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제18조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제28조 제1항, 제3항			
			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의 고신 및 관할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항공 장애 시설	1	항공장애 및 주간장애 표지 설치·관리	시군구청장예의 송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공고와 시행자 및 관리청예의 통지, 사용허가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접수 관리기관 등예의 권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보고·자료제출의 명령, 업무의 검사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29조 제1항 물류시설의 개발및운영에 관한법률 제46조 제1항, 제3항, 제5항 물류시설의 개발및운영에 관한법률 제55조 제1항 물류시설의 개발및운영에 관한법률 제57조 물류시설의 개발및운영에 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물류시설의 개발및운영에 관한법률 제62조 제1호 물류시설의 개발및운영에 관한법률 제67조	국토해 양부 장관	시도 지사	항공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도로법 제50조 제2항 도로법 제74조	국토해 양부 장관	시도 지사	도로법시행령 제9조
해양 접도 구역	1-2	접도구역의 관리 사무	접도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접도구역내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				

일반 교통 안전	1-6	일반·교통안 전진단기관 관리 사무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의 등록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재개업·폐업의 신고접수 및 등록의 말소 등록의 취소 및 영업의 정지명령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자격의 취소 및 정지명령 청문의 실시	교통안전법 제39조 제1항	국토해 양부 장관	시도 지사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
				교통안전법 제40조			
				교통안전법 제43조			
해상 안전	1-2	선박이나 사업장 지도 감독 사무	선박이나 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 개선명령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	해상교통안전법 제22조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 해상교통안전법 제76조 제1항 제8호, 제9호	국토해 양부 장관	시도 지사	해상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국유 재산 도로	1-13	도로와 부속시설 관리 사무	도로와 부속시설의 무주부동산의 처리 도로와 부속시설의 기부채납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국토해 양부 장관	시도 지사	행정관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3항 등 규정 제38조 제4항

		도로와 부속시설의 등기·등록 그밖에 필요한 조치	국유재산법	동 규정 제38조 제5항
		도로와 부속시설의 소관청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의 및 소관여부 조회	국유재산법	동 규정 제38조 제6항
		도로와 부속시설의 국유재산의 관리위탁	국유재산법	동 규정 제38조 제7항
		도로와 부속시설의 관리협약의 협의	국유재산법	동 규정 제38조 제8항
		도로와 부속시설의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국유재산법	동 규정 제38조 제9항
		도로와 부속시설의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 및 갱신허가	국유재산법	동 규정 제38조 제10항
		도로와 부속시설의 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	국유재산법	동 규정 제38조 제11항
		도로와 부속시설의 잡종재산의 관리·처분	국유재산법	동 규정 제38조 제12항
		도로와 부속시설의 대부 및 갱신	국유재산법	동 규정 제38조 제13항
		도로와 부속시설의 국유재산의 명실보고	국유재산법	동 규정 제38조 제14항
		도로와 부속시설의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양도·무상가속 협의	국유재산법외의 다른 법률	동 규정 제38조 제3항

국유 재산 1-13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및 부속시설의 관리 사무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및 그 부속 시설의 무주부동산의 처리	국유재산법	국토해 양부 장관	시도 지사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 정 제38조 제15항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및 그 부속시설의 기부채납	국유재산법			동 규정 제38조 제16항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및 그 부속시설의 등기·등록 그밖에 필요한 조치	국유재산법			동 규정 제38조 제17항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및 그 부속시설의 소관청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의 및 소관여부 조회	국유재산법			동 규정 제38조 제18항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및 그 부속시설의 국유재산의 관리위탁	국유재산법			동 규정 제38조 제19항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및 그 부속시설의 관리협의 협의	국유재산법			동 규정 제38조 제20항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및 그 부속시설의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국유재산법			동 규정 제38조 제21항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및 그 부속시설의 국유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허가 및 갱신허가	국유재산법			동 규정 제38조 제22항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및 그 부속시설의 행정재산등의 용도폐지	국유재산법			동 규정 제38조 제23항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및 그 부속시설의 잡종재산의 관리·처분	국유재산법			동 규정 제38조 제24항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및 그 부속시설의 대부 및 갱신	국유재산법			동 규정 제38조 제25항

문화재보호	1-14	국가지정문화재 관리 사무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및 그 부속시설의 국유재산의 멸실보고	국유재산법			동 규정 제38조 제26항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및 그 부속시설의 공공시설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무상 양도·무상귀속 협의	국유재산법외의 다른 법률			동 규정 제38조 제3항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1호			
			국가지정문화재의 촬영행위 허가 및 그 취소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2호			
			건조물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 등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3호			
			전통양식에 따라 축조된 한식당장을 원형대로 보수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3호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1조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라 신축, 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3호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3호			문화재청장 지사
			표석,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3호			문화재청장
			철책이나 석책을 설치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3호			문화재청장

문화재 보호	1-6	매장문화재 발굴 등에 대한 사무	수목의 가지 고르기, 병충해 방제, 거름 주기 등 일반적인 보호관리의 허가 및 그 취소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3호				
			학술 연구목적이나 보존을위한 종자 및 삼수를 채취하는 행위의 허가 및 취소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3호				
			허가 및 그 취소 중 문화재청장이 고시하는 천연기념물을 사육, 재배,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하는 등의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3호				
			문화재청장이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준을 정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설치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3호				
			문화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문화재보호법 제34조 제3호				
			허가에 따른 신고의 수리	문화재보호법 제38조 제8호 동법시행령 제51조 제3호, 제4호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 또는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한 허가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1항 단서				
			관할 경찰서장에 대한 통지	문화재보호법 제59조 제1항	문화재청장	문화재청장	문화재보호법 제51조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51조
			발굴 또는 발견된 문화재의 공고	문화재보호법 제59조 제3항 전단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지역에서 하는 건설공사나 문화재청장이 고시한 규모 이하의 건설공사에 대한 대책 수립 및 조치명령	문화재보호법 제91조 제4항				

보건 의료 혈액	1-2	특정수혈부작용 발생신고의 접수 및 과태료 부과 사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위한 협의 및 통지	문화재보호법 제99조 제1항 제3호, 제60조 제2항	보건 복지 가족부 장관	시도 지사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문화재보호법 제100조			
보건 광고	1-2	광고내용의 변경·금지명령 또는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의 요청	특정수혈부작용 발생신고의 접수업무	혈액관리법 제10조 제1항	보건 복지 가족부 장관	시도 지사	국민건강증진법 제7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업무(시·도지사에게 위임된 업무의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한한다)	혈액관리법 제23조 제2항			
보건 정신 요양	1-2	정신요양시설 설치허가 및 정신회환자 보호 등에 관한 사무	제조담배에 관한 광고의 금지 또는 제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1항	보건 복지 가족부 장관	시도 지사	국민건강증진법 제31조 제1항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정신보건법 제10조제1항			
			정신요양시설의 개선명령, 사업의 정지명령, 시설의 장의 교체명령 또는 설치허가의 취소	정신보건법 제11조 제1항			정신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산림	1-5	국유재산의 관리 사무	국유재산의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유재산법 제8조	산림청장	시도지사(또는 지방산림청장)	행정권한의위임 위탁규정 제31조 제3항 제3호
			국유재산의 기부채납	국유재산법 제9조			
산림	1	국유재산의 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행정재산등(산림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을 제외한다)의 용도폐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관리에 필요한 전담·대지·건물·기계·기구·공작물 및 임목축에 대한 관리와 처분	국유재산의 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국유재산법 제11조	산림청장	시도지사(또는 지방산림청장)	동규정 제31조 제3항 제4호
			행정재산등(산림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을 제외한다)의 용도폐지	국유재산법 제30조			
중소기업지원	1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권한	사유림등의 부동산 매입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카목	중소기업청장	시도지사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23조의2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권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8조제1항			

행정사	1	행정사의 자격시험실시에 관한 권한	행정사의 자격시험실시에 관한 권한	행정사법 제5조	행정 안전부 장관	시도 지사	행정사법시행령 제4조
새마을금고	1-5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무	금고의 설립인가·합병인가 및 설립인가의 취소	새마을금고법 제7조 제1항 제37조 제3항 제82조	행정 안전부 장관	시도 지사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51조
			금고의 정관변경의 인가	새마을금고법 제12조 제5항			
			금고에 대한 감독권	새마을금고법 제74조 제1항			
			금고에 대한 명령	새마을금고법 제74조 제3항후단			
			설립인가 취소에 따른 청문	새마을금고법 제83조			
지방행정인사	1-6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6급이하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의 임용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6급이하 및 기능직 국가공무원의 임용	공무원임용령	행정 안전부 장관	시도 지사	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5급이상 국가공무원의 승급·진보	공무원임용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4급 및 5급 국가공무원의 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공무원임용령			
			타업무의 겸직허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6급이하 국가공무원 전보의 사전승인	공무원임용령 제45조 제4항				

지방 채	1	지방채 발행계획의 승인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4급 국가공무원의 인사평정서 및 5급 국가공무원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공무원임용령	행정 안전부 장관	시도 지사	행정안전부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
산업 특허	1-4	부정경쟁행위 방지에 관한 사무	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제7조제1항	특허청장	시도 지사	부정경쟁방지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제8조			
			의견청취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제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제기의 수리 및 범원예의 통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제20조			
소 비 자 안 전	1-10	물품의 시험·검사 등 소비자 안전에 관한 사무	시험·검사 또는 조사	소비자기본법 제8조제2항	중앙행정기관의장	시도 지사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68조
			결함내용 보고의 수리 및 시험·검사의 의뢰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	소비자기본법 제47조제1항, 제2항			
			광고 및 통지의 수리와 공표	소비자기본법 제49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명령과 조치	소비자기본법 제50조제1항 및 제2항			
			검사·보고 또는 관계 물품·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명령	소비자기본법 제77조제1항 및 제2항			

물류 화물 자동차	1-22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등에 관한 사무	조치명령과 공표명령 청문 과태료의 부과·징수 시정계획서의 접수 및 자진시정조치 결과보고의 수리 시정계획서의 접수, 시정조치 결과보고의 수리, 그 밖에 시정명령과 관련된 권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사항변경허가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약관의 신고 및 변경신고 신고의 접수 개선명령 양도, 양수 또는 합병의 신고 상속의 신고	소비자기본법 제80조제1항 및 제2항 소비자기본법 제82조 소비자기본법 제86조제2항 소비자기본법 제36조 소비자기본법 제38조	국토 해양부 장관	시도 지사	화물자동차운수 사업법시행령 제1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3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제7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제11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2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5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허가취소·사업정지처분 및 감조치명령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17조 제1항		
		화물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반납 및 반환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18조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과징금운용계획의 수립·시행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19조		
		화물자동차운송사업 허가취소 등의 청문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20조		
		화물운송중사자격의 취소 및 효력정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20조의2 제1항		
		화물운송중사자격 취소시의 청문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20조의2 제3항		
		화물자동차운송중추선사업의 허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21조 제1항		
		화물자동차운송중추선사업의 허가취소 및 사업정지처분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23조의 2		
		통지의 수령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24조의11 제2항		
		보고, 경영실태조사 및 재무관리상태진단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32조		
		협회의 설립인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33조		
		협회사업의 지도감독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37조		

국가 하천	1-15	국가하천의 정용 허가 등에 관한 사무	위탁사무의 수수료 승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신고 접수(국가하천) 하천정용의 허가 및 이의 고시(국가하천) 점용공사의 대행 및 공사기간의 통지(국가하천) 하천예정지 및 연안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국가하천)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의무의 면제, 공작물 등의 국유화 및 원상회복비용의 예치(국가하천)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변화 (국가하천) 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처분 등(국가하천) 처분 또는 조치의 명령(국가하천) 점용물 등의 제거, 보관, 처리 및 그밖에 필요한 조치(국가하천)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등(국가하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7조 제2항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하천법 제5조 제2항 하천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제6호~제9호 하천법 제36조 제1항, 제2항 하천법 제38조 하천법 제48조 하천법 제68조 하천법 제69조 하천법 제70조 하천법 제73조 하천법 제75조	국토 해양부 장관 시도 지사	하천법시행령 제105조
----------	------	-------------------------------	---	---	-----------------------------	-----------------

		허가수수료의 징수(국가하천)	하천법 제89조			
		보고 및 출입등(국가하천)	하천법 제90조			
		정문(국가하천)	하천법 제9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국가하천)	하천법 제98조 제1항			
		과태료의 부과·징수(국가하천)	하천법 제98조 제2항제1호·제6호 및 제7호			
지방하천	1	지방하천에 있어서 폐천부지등의 교환 및 양여	하천법 제85조	국토해양부 장관	시도지사	하천법시행령 제105조
하천 신박 운행	1-2	하천법 제33조제1항제9호에 의한 선박운행허가와 그에 부대하는 동조동항각호의 허가 권리의무 이전신고의 수리, 허가의 취소 등과 관련된 청문	하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하천법 제45조 제1항제2호, 제4호, 제47조	국토해양부 장관	시도지사	매년실시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8조 제2항
여객 자동차	1-17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고속형 시외버스 제외)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국토해양부 장관	시도지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외버스 제외)의 운임·요금 기준 및 요율 결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9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요금의 신고와 수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9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시외버스 제외) 운송약관 및 변경신고 수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10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사업계획변경(고속형 시외버스는 운행시간, 영업소, 정류소, 운송부대시설변경에 한함)의 인가 및 신고 수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11조 제1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고속형 시외버스 제외)의 관리위탁신고의 수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14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고속형 시외버스 제외)의 양도·양수에 대한 신고의 수리 및 인가와 범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15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고속형 시외버스 제외)의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16조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고속형 시외버스 제외)의 휴지 및 폐지의 허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17조 제1항			
	중대한 교통사고에 대한 보고의 수리 및 처리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21조 제2항			
	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 제24조			

안전 진단	1-8	시설물 안전진단 관리 사무	사업용자동차의 차령 연장	사업용자동차의 차령 연장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5조 제3항	국토 해양부 장관	시도 지사	시설물의안전관 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면허·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사업정지처분 및 노선폐지·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변경명령(고속형 시외버스 제외)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제77조				
			충문(고속형 시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건교부 장관의 처분 제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 및 징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5조				
			과태료의 부과처분 및 징수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44조 제1항, 제2항 제1호 제2호 제7호 제14호				
			과태료의 부과·징수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 제1항, 제2항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및 변경등록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 제3항				
			안전진단전문기관의 폐업신고 접수 및 등록말소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4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6 제2항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적의 접수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9조의7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건설 기계	1	건설기계 검사사무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에 관한 정문실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건설기계검사의 권한 매립면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 매립면허에 관한 고시 매립면허수료의 징수 및 면제 매립공사의 실시계획의 인가·변경인가 및 고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매립공사의 준공인가 확인 및 고시 매립목적의 변경인가 및 당해변경인가에 따른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36조	국토 해양부 장관	시도 지사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8조
				시설물의안전관리특별법 제44조 제2항 제3호~제6호			
공유 수면 매립	1-20	공유수면 매립 사무(연안항, 국가어항구 역)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제1항제1호 공유수면매립법 제13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2항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공유수면매립법 제28조 공유수면매립법	공유수면매립법 제3항까지	국토 해양부 장관	시도 지사	공유수면매립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공유수면매립법 제13조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공유수면매립법 제15조			
				공유수면매립법 제16조 제2항			
				공유수면매립법 제25조			
				공유수면매립법 제28조			
				공유수면매립법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 및 고시	제29조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	공유수면매립법 제30조 제2항		
매립지의 사용확인		공유수면매립법 제31조					
면허·인가등의 취소·변경, 공작물 기타 물건의 계속·제거 및 원상회복 기타 필요한 처분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					
손실보상		공유수면매립법 제33조					
매립면허의 효력회복		공유수면매립법 제34조					
원상회복의 연재, 시설 기타 물건의 국가거수 조치 및 이행보증금의 예치 조치		공유수면매립법 제35조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 명령, 장부·서류 기타 물건의 검사 및 질문		공유수면매립법 제36조					
청문		공유수면매립법 제37조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에 관한 협의·승인 및 잔공인가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 제1항, 제3항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에 관한 매립면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의 협의 등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제2호,제4호,제5호,제6의2호,제7호, 제9호,제15호					

연안 항	1-22	연안항 항만 시설 관리 사무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에 관한 협의·승인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공유수면매립법 제38조의2 제1항 및 제2항	국토 해양부 장관	시도 지사	항만법시행령 제43조 제2항
			정부사업으로 인한 매립지의 이관	공유수면매립법 제39조			
			항만시설의 지정·고시	항만법 제2조 제6호			
			항만대장의 작성·비치	항만법 제25조			
			시설장비의 설치·철거 신고의 수리	항만법 제26조 제1항			
			시설장비의 자체 점검에 관한 업무	항만법 제27조			
			시설장비의 검사에 관한 업무	항만법 제28조			
			감사의 면제에 관한 업무	항만법 제29조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운영의 위임·위탁, 사용신고의 수리, 항만시설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 관리청이 아닌 자의 사용료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 신고의 수리	항만법 제32조			
			비관리청의 사용료 징수방법등에 관한 사항의 신고의 수리 및 항만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명령	항만법 제33조			
			토지에의 출입 및 사용과 장애물 제거	항만법 제51조			
			비상재해시의 토지등의 사용 또는 수용등	항만법 제52조			

			임항지역 및 본구의 설정	항만법 제54조
			손괴자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항만법 제158조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항만법 제62조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	항만법 제63조
			공익을 위한 처분	항만법 제64조
			출입 및 검사 등	항만법 제67조
			장기채류 화물의 처리	항만법 제68조
			공용부담 또는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한 업무	항만법 제69조, 제70조
			권리·의무의 이전에 관한 업무	항만법 제74조
			항만관리법인의 지정	항만법 제75조
			허가등의 수수료 징수	항만법 제79조
			항만시설의 사용료 및 임대료율의 결정에 관한 사항	항만법 제32조

자 동 차 운 수 업	1	자 동 차 운 수 업 관 리	자 동 차 운 수 업	여 객 자 동 차 운 수 업 법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시 도 지 사	행 정 관 한 의 위 임 및 위 탁 에 관 한 규 정 제 38 조 제 3 항
주 택 대 지	1-2	주 택 건 설 및 대 지 조 성	주 택 건 설 사 업 또 는 대 지 조 성 사 업	주 택 법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시 도 지 사	행 정 관 한 의 위 임 및 위 탁 에 관 한 규 정 제 38 조 제 3 항
			주 거 시 설 의 건 축 에 편 입 되 는 초 지 전 용 의 추 천	건 축 법			
법 인 관 리	1-2	비 영 리 법 인 등 관 리 사 무	비 영 리 법 인 의 설 립 허 가·취 소, 해 산 신 고 수 리 기 타 지 도 감 독 에 관 한 권 한	인 법 제 32 조	국 토 해 양 부 장 관	시 도 지 사	행 정 관 한 의 위 임 및 위 탁 에 관 한 규 정 제 38 조 제 3 항~제 4 항
			한 국 해 양 소 년 단 연 맹 특 별 시·광 역 시·도 지 부 의 지 도·감 독 에 관 한 권 한	근 거 규 정 없 음			
부 산 항 만	1-13	부 산 항 의 항 만 구 역 안 의 공 유 수 면 허 가 사 무	공 유 수 면 관 리 법 시 행 령 제 2 조 제 1 호 의 규 정 에 의 한 공 유 수 면 중 부 산 항 의 항 만 구 역 안 의 공 유 수 면 에 대 한 점·사 용 허 가	공 유 수 면 관 리 법 제 5 조, 제 6 조, 제 8 조~제 10 조, 제 12 조~ 제 14 조, 제 16 조~제 19 조, 제 24 조	국 토 해 양 부 장 관	부 산 광 역 시 장	행 정 관 한 의 위 임 위 탁 규 정 제 40 조 제 10 항
			부 산 항 의 항 만 구 역 안 의 공 유 수 면 에 대 한 협 의 또 는 승 인	공 유 수 면 관 리 법 제 5 조, 제 6 조, 제 8 조~제 10 조, 제 12 조~ 제 14 조, 제 16 조~제 19 조, 제 24 조			
			부 산 항 의 항 만 구 역 안 의 공 유 수 면 에 대 한 실 시 계 획 의 승 인 등	공 유 수 면 관 리 법 제 5 조, 제 6 조, 제 8 조~제 10 조, 제 12 조~ 제 14 조, 제 16 조~제 19 조, 제 24 조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제19조, 제24조	
부산남항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료의 징수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제19조, 제24조	
부산남항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에 대한 원상회복 등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제19조, 제24조	
부산남항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에 대한 방치신박등의 제거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제19조, 제24조	
부산남항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에 대한 조사 등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제19조, 제24조	
부산남항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에 대한 공익을 위한 처분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제19조, 제24조	
부산남항의 항만구역안의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제10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제19조, 제24조	

농지 전용 허가	1-7	농지 전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부산남향의 향만구역안의 공유수면에 대한 손실보상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제10조, 제12조~제14조, 제16조~제19조, 제24조		
			부산남향의 향만구역안의 공유수면에 대한 청문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제10조, 제12조~제14조, 제16조~제19조, 제24조		
		부산남향의 향만구역안의 공유수면에 대한 과태료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제10조, 제12조~제14조, 제16조~제19조, 제24조			
농지 전용 허가	1-7	농지 전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협의	농지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농지법 시행령 제71조 1항
			농지의 전용 관련 협의	농지법 제34조제2항제1호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관계 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청문,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농지법 제39조, 제55조제2호, 제58조		
			원상회복명령 및 대집행	농지법 제42조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농지법 제38조		

농업 기반 정비	1-9	농업기반정비사업에 관한 사무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수립 및 농업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의 변경(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제외한다).폐지승인	검사 및 조사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협의 예정지 조사실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개보수 및 준설사업의 기본조사실시 및 기본계획수립 농업기반정비사업의 기본조사실시 및 기본계획수립	농지법 제54조제1항 농지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농어촌정비법 제6조 제2항 농어촌정비법 제7조 농어촌정비법 제7조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7조 1항 제2호	농지법 시행령 제71조 2항 단서
				세부실계 실시 및 농영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수립 사업시행의 인가·통지·고시 및 재산의 관리·처분승인 농어촌영수구역의 고시 허가 및 변경허가 무상양여	농어촌정비법 제8조 농어촌정비법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농어촌정비법 제15조 제2항 농어촌정비법 제18조의2 제3항 농어촌정비법 제92조 제1항 농어촌정비법 제93조제1항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77조 1항	
국가 방조 제	1	국가관리방 조제의 개수 또는 보수공사의 사업시행인 가	국가관리방조제의 개수 또는 보수공사의 사업시행인가	검사 및 조사	방조제관리법 제7조 제1항	방조제관리법 시행령 제17조	

정부 관리 양곡	1-2	정부관리양 곡에 대한 판매 및 감독 등에 관한 사무	정부관리양곡중 관수용·가공용·공공용 및 종자용 양곡의 판매 양곡의 소유자·양곡매매업자·양곡가공업자 및 양곡을 수출·수입·보관 또는 수송하는 자에 대한 감독과 조사공무원의 증표발행	양곡관리법 제9조 제1항 양곡관리법 제27조	농림수 산식품 부장관	시도 지사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4조 1항
농어 임보 전	1	농어업인 보전제 사무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폐업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1항	농림수 산식품 부장관	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	자유무역협정체 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1항
식물 방역	1	방제명령 위반 관리	방제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식물방역법 제35조제1항제3호	농림수 산식품 부장관	시도 지사	식물방역법시행 령 제17조 2항
지방 도매 시장	1-2	지방도매시 장 관리 사무	지방도매시장의 개설구역에 인접한 구역의 개설구역으로의 편입(특별시·광역시 및 도간의 구역편입을 제외한다) 지방도매시장·공판장 또는 민영도매시장의 통합·이전·폐쇄 및 개설명령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8조단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 및 제2항	농림수 산식품 부장관	도지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 1항

농산물 유통 기관	1	농산물 중 누에씨·누에 고치의 검사에 관한 사항	<p>농산물중 누에씨·누에 고치의 검사에 관한 사항</p> <p>사업을 수행하는 자의 선정 및 자금지원</p> <p>지정해역 및 주변해역에서의 오염물질 배출행위, 가축 사육행위 및 동물용의약품 사용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p> <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의 적합여부 조사·점검</p> <p>지정해역에서의 수산물의 생산제한</p> <p>중지·보수·개선명령등</p> <p>안전성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통보 및 필요한 조치요청</p> <p>원산지의 표시여부,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의 적정성 확인</p> <p>수산물 가공업의 등록기준에의 적합성 여부의 확인 및 점검</p> <p>출입등</p> <p>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명령 및 이의 접수 청문</p> <p>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p>	<p>농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p> <p>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5호</p> <p>수산물품질관리법 제24조의3제1항 및 제2항</p> <p>수산물품질관리법 제26조제2항</p> <p>수산물품질관리법 제27조</p> <p>수산물품질관리법 제28조</p> <p>수산물품질관리법 제43조제1항 및 제3항</p> <p>수산물품질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p> <p>수산물품질관리법 제46조제3호의2</p> <p>수산물품질관리법 제46조</p> <p>수산물품질관리법 제49조제1항</p> <p>수산물품질관리법 제50조</p> <p>수산물품질관리법 제56조</p>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2조 2항
수산물 품질	1-12	수산물품질관리사무		<p>농림수산식품부장관</p> <p>시도지사</p>	시도지사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4항	

양곡수급	1	정부관리 양곡의 가공사우	특별시·광역시·도의 수요분으로 확정된 정부관리양곡의 가공업무	양곡관리법 제24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제29조 제1항 제1호
농업기반시설	1-19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대한 사무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관리	국유재산법 제6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제29조 제1항 제4호
			농업기반시설용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유재산법 제8조			
			농업기반시설용으로 사용할 재산의 기부채납	국유재산법 제9조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관한 등기·등록 기타 필요한 조치	국유재산법 제11조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소관청 지정신청	국유재산법 제16조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관리위탁	국유재산법 제21조 제2항			
			농업기반시설용 및 농업기반시설용으로 사용할 국유재산에 관한 관리환의 협의 및 관리환의 재정신청, 재정신청,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관리환의 결정 및 결정문서 교부	국유재산법 제22조 동법시행령 제22조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의 허가	국유재산법 제24조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용료 징수	국유재산법 제25조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용료 면제	국유재산법 제26조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기간의 갱신	국유재산법 제27조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의 취소와 철회	국유재산법 제28조			
	농업기반시설용 행정재산등의 관리소홀에 대한 제재	국유재산법 제29조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용도폐지재산의 인계	국유재산법 제30조			
	용도폐지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중 각종재산의 관리·처분	국유재산법 제32조 제1항 단서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대장·등기부등본과 도면의 비치, 실태조사, 대장의 정비 및 서류의 열람·복사·등본·초본의 교부 청구	국유재산법 제46조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	국유재산법 제51조			
	농업생산기반시설용 국유재산에 관한 과오납금 및 반환가산금의 반환	국유재산법 제51조의 2			
	농업기반시설용 국유재산의 관리	국유재산법 제52조			

관세 감면	1	관세감면대 상물품 중 종마·중앙 등 확인사무	관세감면대상물품중 종마·중앙·종축용오리·종도·종축용잉크 및 종축용여우에 대한 관세감면대상가축의 확인업무	관세법 제93조 제1항	농림 수산 식품부 장관	시도 지사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제29조 제1항 제5호
도시 관리 계획	1	농업진흥지 역의 도시관리계 획사무	다음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의 협의 가. 농업진흥지역 안 :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나. 농업진흥지역 안 :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지방산업단지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면적이 해당 지방산업단지면적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에 한한다)에 편입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 제1항	농림 수산 식품부 장관	시도 지사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제29조 제1항 제6호
공유 수면 매립 지구	1-2	공유수면매 립사업 협의사무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협의 권한 중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 지구의 보상수면에 대한 협의 한정어업면허의 협의에 관한 권한 중 시장·군수가 사업시행자인 공유수면매립사업 지구의 보상수면에 대한 협의	수산업법 제4조제3항 및 제5항 수산업법 제17조제1항	농림 수산 식품부 장관	시도 지사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제46조 제4항

농림 법인 관리	1	비영리법인 등 관리 사무	농림부장관 주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민법 제32조	농림 수산 식품부 장관	시도 지사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제29조 제1항 제8호
농산 물보 조금	1	농산물 관련 보조금관리 사무	특별시·광역시·도에 교부된 보조금에 의한 농임용 및 농산물가공시설의 목적외 사용·양도·교환·대여 및 담보제공의 승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5조	농림 수산 식품부 장관	시도 지사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규정 제29조 제1항 제9호
농지 전용	1	농지전용 협의사무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 농업진흥지역안 3천~3만제곱미터 농지 농업진흥지역밖 3만~20만제곱미터 농지 지역·지구 내 10만제곱미터 이상 농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77개 개별법률	농림 수산 식품부 장관	시도 지사	행정권한의위임 위탁규정 제29조 제2항 농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제2항
농업 공유 수면 매립 지	1	농업 및 축산업 관련 공유수면매 립 사무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바다 및 바닷가에서의 농업 및 축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권한중 매립면적이 3천헥타아르 미만의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권한	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40조 제4항	농림 수산 식품부 장관	시도 지사	행정권한의위임 위탁규정 제29조 제10항

농수산보조금	1	보조금의 사용승인 사무	특별시·광역시·도에 교부된 보조금에 의한 수산시설의 목적 외 사용·양도·교환·대여 및 담보제공의 승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행정권한의위임 위탁규정 제40조 제3항
부산어패류조항	1	어패류조항 감독 사무	부산어패류처리조항에 대한 감독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부산광역시	행정권한의위임 위탁규정 제40조 제4항
어업자원	1	허가 및 취소 사무	허가 및 그 취소·제한·정지	어업자원보호법 제2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행정권한의위임 위탁규정 제40조 제3항
농업연관	1-2	도연관인사 사무	도 농업기술원에 두는 연구관 및 지도관의 호봉승급	도 농업기술원에 두는 연구관 및 지도관의 호봉승급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행정권한의위임 위탁규정 제30조 제2항

출판진흥	1	출판 관련 과태료 관리사무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8조 제1항 제5호	문화관광체육부장관	시도지사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문화관광체육부	1-3	비영리법인 등 관리 사무	각종 종교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다만, 활동범위가 3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에 걸치는 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와 목적·영직·사무소의 소재지(특별시·광역시·도를 달리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정관변경 허가를 제외한다.	출판및인쇄진흥법 제28조 제2항 제3호	문화관광체육부장관	시도지사	행정관한의위임 위탁규정 제28조 제2항 제3호
			문화예술품 및 관광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법인의 활동범위가 2 이하의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안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한다)				
문화관광체육부	1	전통사찰의 농지취득관리 사무	각종 체육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1항	문화관광체육부장관	시도지사	행정관한의위임 위탁규정 제28조 제2항 제10호
			전통사찰의 농지취득을 위한 추천				
문화재청	1	비영리법인 관리 사무	문화재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다만, 법인의 활동범위가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안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한다.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행정관한의위임 위탁규정 제28조의2

기초 생활수급	1-2	의료급여기관 과징금 관리사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과징금의 징수권한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	보건복지부 가족부 장관	시도 지사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9조
			시·군·구에 대한 지도·감독 및 보고에 관한 권한		의료급여법 제32조 제1항			
양정 책	1-3	말기암환자 전문의료기관 관리사무	말기암환자전문의료기관의 지정		암관리법 제11조 제2항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 지사	암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역학조사		암관리법 제6조의2 제1항 제2호			
			지역역학조사반의 구성·운영, 반원의 임명 또는 위촉, 수당 등의 지급		암관리법 제6조의3 제1항~제3항, 제6항			
보건복지	1-4	보건복지 관련 비상대비자원관리사무	민수용 중점관리의료기관 지정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 지사	보건복지부소관 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식품·의약품·의료기기·의료기구 기타 위생용품자의 생산업체 지정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의료기기 및 의료기구의 수리업체 지정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의약품의 판매업체 지정		보건복지부소관비상대비자원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복지정책	1	복지관련 기증품관리 사무	관세기증품의 용도증명		관세법 제91조 제2호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 지사	행정관회의위임 위탁규정 제34조 제5항 제3호

보건 복지	1	국고관리업무 관직 지정 사무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공무원을 보건복지부 소관 국가세입·세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재무관·지출관·분임재무관 및 분임지출관으로의 위임 및 임명과 그 위임 및 임명에 갈음하는 관직의 지정	국고관리법 제21조, 제22조, 제40조	보건 복지 가족부 장관	시도 지사	행정권한의위임 위탁규정 제34조 제5항 제5호
보건 의약	1	의약품취급 관리 사무	특수지역에서의 의약품 취급지정	법을 제1491호 약사법 부칙 제6조	보건 복지 가족부 장관	시도 지사	행정권한의위임 위탁규정 제34조 제5항 제6호
보건 의료	1	의료기관 리 사무	의료기사의들의 실태와 취업상황에 대한 신고의 수리	의료기사의등에관한법률 제11조	보건 복지 가족부 장관	시도 지사	행정권한의위임 위탁규정 제34조 제5항 제8호
복지 법인 관리	1-3	비영리법인 등 관리 사무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	민법 제32조	보건 복지 가족부 장관	시도 지사	행정권한의위임 위탁규정 제34조 제5항 제9호
			모지조성, 화장장 및 납골당 설치 또는 나환자 정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	민법 제32조			
			각종의료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기타 지도·감독	민법 제32조			

사회 복지 법인	1	복지법인의 농지취득관 리 사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법인의 농지취득 인정을 위한 추천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보건 복지 가족부 장관	시도 지사	행정권한의위임 위탁규정 제34조 제5항 제12호
사회 복지 법인	1-3	비영리법인 등 관리 사무	각종 청소년관계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2호	보건 복지 가족부 장관	시도 지사	행정권한의위임 위탁규정 제40조의2 제1항
			한국스카우트연맹·한국결구스카우트연맹 및 한국청소년연맹 특별시·광역시·도지부의 지도·감독				
			한국스카우트지원재단·한국결구스카우트지원 재단 및 한국청소년연맹육성재단의 지도·감독				
재생 에너 지	1	지방보급사 업에 관한 권한	지방보급사업에 관한 권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2항	지식 경제부 장관	시도 지사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시행령 제30조제2항
소비 세	1	특별소비세 물품증명 사무	이화·학실·환경연구용·공업용·축염기침 제작용 또는 공업용 시설기재에 해당하는 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3호, 제4호 동법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1호	지식 경제부 장관	시도 지사	행정권한의위임 위탁규정 제32조 제1항 제1호
지식 경제 부법 부법 인	1	비영리법인 등 관리 사무	비영리법인(활동범위가 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국한되는 경우)의 설립허가·취소, 해산신고의 수리, 그 밖의 지도·감독	민법 제32조	지식 경제부 장관	시도 지사	행정권한의위임 위탁규정 제32조 제1항 제2호

초지 전용	1	초지 전용추천 사무	초지전용의 추천권한 중 3헥타르이하의 초지전용의 추천	초지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제4호	지식경제부장관	시도지사	행정권한의위임 위탁규정 제32조 제1항 제3호
산림조합	1	지방자치단체 보조 사업의 감시결과관리 사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사 및 보고의 수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산림조합법 제22조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8조 1항
			<p>임업후계자의 선발·지원 및 선발취소</p> <p>독림가(우수독림가와 자영독림가만을 말한다)의 선정·지원 및 선정취소</p> <p>5만 제곱미터 미만의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p>	<p>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3항</p> <p>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및 제3항</p> <p>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p>	<p>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3항</p> <p>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및 제3항</p> <p>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p>	<p>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및 제3항</p> <p>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및 제3항</p> <p>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p>	
산림	1-2	백두대간보호 호에 관한 사무	백성구역안에서의 5천제곱미터 미만의 개별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산림청장	도지사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1항
			완충구역안에서의 1만제곱미터 미만의 개별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산림청장	도지사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1항
산림관리	1-3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무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의 타당성 평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산림청장	시도지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산림기술자의 자격관리 및 행정처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6항제1호, 제30조 7항	산림청장	시도지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조림비 및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비의 반환조치에 관한 권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산림청장	시도지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1항

초지 전용	1	초지조정지 구지정 사무	초지조정지구의 지정의 협의	초지법 제3조 제2항	산림 청장	시도 지사	행정관한의위임 위탁규정 제31조 제3항 제1호
소방 시설	1-2	소방기구관 리 사무	방염성능 검사중 합판·목재를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한 경우의 방염성능 검사업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소방 방재 청장	시·도 지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소방용 기계·기구 등에 대한 수거·폐기 또는 교체 명령의 권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7항			
소방 인사	1	소방인력 인사사무	소방감·소방준감 및 소방정의 승급에 관한 권한		소방 방재 청장	시도 지사	행정관한의위임 위탁규정 제25의2 제1항 제1호
방재 법인 관리	1-2	비영리법인 등 관리 사무	자연재난 관련 비영리법인 가운데 특별시·광역시·도가 출연하지 아니한 법인 중 소방방재청장이 허가관청이 되고 활동범위가 하나의 특별시·광역시·도에 한정되는 법인의 설립허가·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및 그 밖의 지도·감독	민법 제32조	소방 방재 청장	시도 지사	행정관한의위임 위탁규정 제25의2 제1항 제3호
			자연재난 관련 비영리법인 가운데 특별시·광역시·도가 출연한 법인 중 활동범위가 하나의 특별시·광역시·도에 한정된 법인의 지도·감독	민법 제32조			

위안 부피 해	1-4	일제하 일본군위안 부피해자 지원 사무	등록신청의 접수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 등에관한법률 제3조제1항	여성부 장관	시도 지사	일제하일본군위 안부피해자에대 한생활안정지원 및기념사업등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 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여성발전기본법 시행령 제37조
			간병비지급신청의 접수·조사 및 간병비 지급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 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 등에관한법률 제7조의2 제2항, 제3항			행정권한의위임 위탁규정 제37조 제2항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경비교부 및 그 교부에 따른 당해 사업의 관리업무	여성발전기본법 제34조의3			
여성 부범 인	1-2	비영리법인 등 관리 사무	특별시·광역시·도가 출연하지 아니한 법인 중 활동범위가 하나의 특별시·광역시·도에 한정되는 법인의 설립허가·취소, 정관변경허가, 해산고의 수리 및 그 밖의 지도·감독	민법 제32조	여성부 장관	시도 지사	
			특별시·광역시·도가 출연한 법인 중 활동 범위가 하나의 특별시·광역시·도에 한정된 법인의 지도·감독	민법 제32조			

중소 기업 사업	1-9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사무	신고의 접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중소 기업 청장	시도 지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제1항
			명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사업조정에 관한 신청의 접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의견서의 접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			
			통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권고·공표 및 명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			
			권고 및 철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및 제2항			
			자료제출요구 및 조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과태료에 관한 권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제2호			
			보호업무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 한법률 제22조제1항			
북한 주민 보호	1-5	북한이탈주 민보호· 정착지원 사무	통일부 장관				

		실태조사 및 거주지보호대장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예관 한법을 제22조, 제41조제1항 및 제3항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정착지원 예관한법을시행 령 제49조제1항
		지역사회에 관련된 각종 정보·자료의 제공등 보호대상자의 지역사회 편인지원에 관한 사항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예관 한법을 제22조			
		지역사회내 사회복지서비스기관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예관 한법을 제22조			
		기타 거주지에서 의 자립·정착에 관련된 사항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예관 한법을 제22조			
전자 정부 사업	전자정부사 업 사전협의 사무	전자정부사업의 사전협의 권한	전자정부법 제45조의3 제1항	행정 안전부 장관	시도 지사	전자정부법시행 령 제72조 동 시행령 제73조
주민 등록	주민등록관 리 사무	지방자치단체 소프트웨어 중복개발 방지를 위한 조정권한	전자정부법 제64조 제1항	행정 안전부 장관	시도 지사	주민등록법시행 령 제2조
행안 부 법 인	비영리법인 등 관리 사무	주민등록증의 발급등에 관한 시군구청장에 대한 지도·감독권	주민등록법 제17조의8	행정 안전부 장관	시도 지사	행정권한의위임 및위탁에관한규 정 제24조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또는 활용에 관한 승인권	주민등록법 제18조의2 제1항	행정 안전부 장관	시도 지사	
		특별시·광역시·도가 출연하지 아니한 법인중 행정자치부장관이 허가관청이 되고 활동범위가 하나의 특별시·광역시·도에 한정되는 법인의 허가 및 그 취소와 지도·감독	민법 제32조	행정 안전부 장관	시도 지사	
		특별시·광역시·도가 출연한 법인 중 활동범위가 하나의 특별시·광역시·도에 한정된 법인의 지도·감독	민법 제32조			

공무원 인사	1	공무원 결원보충 사무	5급 이하 공무원의 파견으로 인한 결원보충의 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	행정 안전부 장관	시도 지사	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
행정 기관 설치	1	행정기관의 설치승인 사무	구의 합의회행정기관의 설치승인	지방자치법 시행령	행정 안전부 장관	시도 지사	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
자연 공원	1-28	국립공원 유지·관리 사무	산림 기타 자연자원의 보호	자연공원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1호	환경부 장관	시도 지사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국립공원시설의 유지관리와 공원사업의 시행	자연공원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2호			
			탐방객 안전관리대책	자연공원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3호			
			공원별 보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자연공원법 제17조의2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	자연공원법 제18조 제2항 제1호 사목			
			비공원관리청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및 공원시설관리허가	자연공원법 제20조			
행위허가	자연공원법 제23조						

	신고에 관한 사항	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단서			
	자연공원의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자연공원법 제24조			
	방치된 물건등의 제거에 관한 사항	자연공원법 제24조의2			
	관계인 및 관계문서 등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	자연공원법 제24조의3			
	퇴거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자연공원법 제24조의4			
	행위허가, 공원보호구역의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자연공원법 제25조제3항, 제24조			
	금지행위의 단속	자연공원법 제27조			
	출입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자연공원법 제28조			
	영업 기타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자연공원법 제29조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자연공원법 제30조			
	대집행	자연공원법 제31조			
	사법경찰관리의 지명제정	자연공원법 제34조			

대기 보전	1-9	수도권 사업장 대기오염물 질 규제 사무	자연자원의 조사	자연공원법 제36조	환경부 장관 등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
			공원입장료 및 공원시설사용료의 징수와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	자연공원법 제37조		
			공원점용료 등의 징수	자연공원법 제38조		
			협약	자연공원법 제71조 제1항, 제2항		
			다른 사람의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	자연공원법 제72조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자연공원법 제73조의2		
			협약매수 및 매수청구대상토지 매수	자연공원법 제76조, 제78조		
			환경부장관이 허가하거나 협의한 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자연공원법시행령 제45조 제2항 제5호, 제7호, 제17호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	자연공원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8호		
			사업장설치의 허가·변경허가 및 허가의 제한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1항, 제15조		
신고의 수리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3항 후단					
배출허용총량의 할당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항					

한강수계수질보전	1-2	한강수계상수원관리사무	<p>자료의 요청</p> <p>다음연도 배출허용총량의 감량</p> <p>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p> <p>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 및 폐쇄명령</p> <p>보고명령·자료제출명령 및 검사</p> <p>청문</p> <p>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줄이기계획의 접수, 이행여부의 확인, 이행명령, 사업장 등에의 출입·조사, 자료 및 조사 결과의 공표</p> <p>과태료의 부과·징수</p>	<p>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16조제6항</p> <p>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19조제2항</p> <p>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0조</p> <p>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21조</p> <p>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36조 제1항 제1호</p> <p>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제37조 제1호, 제2호</p>	<p>환경부 장관</p>	<p>시도지사</p>	<p>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및주민 지원등에관한법 률시행령 제30조 제1항</p>
				<p>민법 제32조</p>	<p>환경부 장관</p>	<p>시도지사</p>	<p>행정권의위임 위탁규정 제36조 제2항 제1호</p>
				<p>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취소, 정관변경의 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및 그 밖의 지도·감독에 관한 권한(법인의 활동범위가 인접한 2개 이하의 특별시·광역시·도의 관할구역 안에 국한되는 경우에 한한다)</p>	<p>환경부 장관</p>	<p>시도지사</p>	<p>행정권의위임 위탁규정 제36조 제2항 제1호</p>
				<p>비영리법인 등 관리 사무</p>	<p>환경부 장관</p>	<p>시도지사</p>	<p>행정권의위임 위탁규정 제36조 제2항 제1호</p>
				<p>1</p>	<p>환경부 장관</p>	<p>시도지사</p>	<p>행정권의위임 위탁규정 제36조 제2항 제1호</p>
				<p>환경부령인</p>	<p>환경부 장관</p>	<p>시도지사</p>	<p>행정권의위임 위탁규정 제36조 제2항 제1호</p>

환경 부 기 술 자 격	1	국가기술자 격관리 사무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정지 및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에 관한 청문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환경부 장관	시도지 사	행정권한의위임 위탁규정 제36조 제2항 제1호
통계 조사	1-7	통계조사관 리 사무	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의 설계 (조사구, 조사표 및 표본의 설계를 포함한다) 및 개발	통계법 제37조제1항	통계청 장	시도지 사	통계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통계조사원(통계조사 지도원, 통계조사내용 검토요원을 포함한다)의 모집·채용·교육훈련·관리 및 증표 발급	통계법 제37조제1항			
			통계조사표의 배부·접수·수집 및 제출	통계법 제37조제1항			
			통계조사표의 내용검토·확인 및 보완	통계법 제37조제1항			
			통계조사자료의 입력·처리 및 제출	통계법 제37조제1항			
			통계조사업무의 지도·감독 및 홍보	통계법 제37조제1항			
			수집된 자료의 분석이나 그 밖의 통계작성업무에 필요한 사항	통계법 제37조제1항			
보조금 관리	1-7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에 관한 사무	보조금교부신청의 접수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결정의 취소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2항	중앙관 서의 장	지방자 치단체 의 장	보조금의예산및 관리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7조

경제자유구역	1-7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사유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	중앙행정기관의장	시도지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제1항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처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			
			보고의 접수 및 검사 또는 질문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경제자유구역	1-7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사유	개발사업의 착수기한 연기조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 단서	중앙행정기관의장	시도지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31조제1항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진 도지 등의 사용허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제1항, 제 14조제3항 단서			
			외국인전용 약국의 등록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3조제2항			
			퇴출업종등에 대한 영업정지 또는 시설의 폐쇄명령, 정문 및 대집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9조제2항, 제3항, 제4항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및 변경 내용의 관보 고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7조의2 제1항, 제2항, 제4항			
			실시계획의 변경승인 및 변경승인의 관보 고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			

국유 재산 관리	1-5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	소관 관리청의 지정 사무	국유재산법 제16조	총괄청	시도 지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용도를 폐지한 행정재산 등의 인계·인수 등 국유재산 관리사무	국유재산법 제30조제2항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제2항
국가 기술 자격	1-2	국가기술자 격 관리 사무	잠종재산의 대부료 및 연체료 징수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동법 채납처분에 관한 규정	관리청	지방 자치 단체 의 장	국유재산법 제38조제3항
			기술자격을 취소 정지와 기술자격 수첩의 회수 및 송부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2항, 시행령 제25조제1,2항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지방 산업 단지	1	지방산업단 지내 국유지 관리 사무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국가기술자격법 제17조	지식 경제부	시도 지사	동법 제17조
			지방산업단지내 국유지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사무	지방직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 제34조			지방직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 제51조, 제59조

환경 부담 금	1-5	환경개선부 담금 부과징수 사무	개선부담금의 부과 징수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제1항		환경부	시도 지사	환경개선비용부 담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증명서류의 접수	시행령 제4조제6항			
				분할 납부허가 및 허가 취소	시행령 제8조의2			
				개선부담금의 강제 징수	제20조제1항, 제2항			
생태 계보 전	1-2	생태계보전 협력금 징수 사무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 징수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제1항		환경부	시도 지사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 징수	제48조				
강 수계 관리	1-6	영산강섬진 강, 금강, 낙동강 수계 관리 사무	영산강섬진강 수변구역의 관리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환경부	시도 지사	영산강섬진강수 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0조
			영산강섬진강 수변구역내 시설 설치허가	제5조제2항				
			금강 수변구역의 관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금강 수변구역내 시설 설치허가	제5조제2항				

			낙동강 수변구역의 관리 낙동강 수변구역내 시설 설치허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낙동강 수변구역내 시설 설치허가	제5조제2항			시행령 제38조
도서 지역 환경	1-3	특정도서지역 관리 사무	출입의 제한 금지 및 이에 관한 사항의 공고 토지 등의 매수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제12조의2	시도 지사	환경부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시행령 제6조 동 특별법 제13조, 시행령 제7조 동 특별법 제13조, 시행령 제8조
동식물 보호 구역	1	동식물 특별보호구역 사무	출입 제한 금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의 토지 매수 및 손실보상	제16조제1항제3호	시도 지사	환경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6조, 시행령 제39조

자동차 검사 사	1-9	자동차검사 및 청문 등에 관한 사무	자동차의 검사에 관한 사무	자동차관리법 제43조	국토 해양부	시도 지사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지정비사업자의 지정	제45조제1항			
			지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제44조제3항, 제45조제4항			
			지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명령	제46조제2항			
			택시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	제47조제1항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제44조제3항, 제47조2항			
			전산자료의 이용승인	제69조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제75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84조			
산업 단지 개발	1-13	국가산업단 지의 개발에 관한 사무	산업단지 개발계획의 변경	산업입지및개발에 관한법률 제6조제5항	국토 해양부	시도 지사	산업입지및개발 에 관한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산업단지지정 등의 고시	제7조의4			
			사업시행자의 지정	제16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17조제1항			
			실시계획의 승인의 고시 및 관계서류사본의 송부	제19조의2제1항			
			실시계획승인에 관한 협의 등	제21조제2항			
			공공시설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의견 청취	제26조제3항			
			국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양도에 관한 협의	제27조제2항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준공검사 및 준공검사 의뢰	제37조제1항, 제2항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공고 및 통지	제37조제5항			
			사업시행자에 대한 보고 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	제47조제1항			

건설업	1-4	건설업 등록관리 사무	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독처분·중문 및 고시 시행령 발표외의 국가산업단지내 대한 사업시행자의 지장에 관한 권한 등 영업의 정지 또는 과징금의 부과 건설업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건설업등록말소 등의 공고 및 통지 청문	제48조 시행령 제49조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83조 제85조의3 제86조	국토 해양부	시도 지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	-----	-------------------	---	---	-----------	----------	---------------------------

2. 기관위임사무의 지방이양 대상 목록(국가·시도에서 시군구로) ----- 91개

분야	연번	소기능	단위사무	근거법령	원처리권자	현처리권자	위임근거법령
부권	1-2	부권 및 부권기관관리 사무	조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출입·조사	부권및부권기관법 제1항 제2호	부권위원회	시군구청장	부권및부권기관 법시행령 제22조의2제 2항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의 접수·통보	부권및부권기관법 제36조제1항제1호·제2항 및 제3항, 제5항			
공유 수면	1-13	공유수면관리 사무	점·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와 당해 점·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에 따른 협의 및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	국토해양부 장관	시군구청장	공유수면관리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공유수면의 점·사용에 관한 협의·승인 및 변경 협의·승인과 이에 따른 협의 및 고시	공유수면관리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실시계획의 인가 및 변경인가와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공유수면관리법 제8조			
			점·사용료의 징수·감면 및 분할납부 조치	공유수면관리법 제9조			
			변상금의 징수 및 분할납부 조치	공유수면관리법 제10조			
			원상회복의무 면제의 승인, 원상회복명령,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및 공작물등의 국가에의 귀속 조치	공유수면관리법 제12조			

			물건등의 제거명령 및 당해물건등의 제거·처분 조치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의 출입 및 조사	공유수면관리법 제14조			
			허가의 취소, 점·사용의 정지, 시설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이전 명령	공유수면관리법 제16조			
			허가의 취소, 점·사용의 정지, 공유수면의 원상회복명령, 시설물 기타 공작물의 개축·이전 명령	공유수면관리법 제17조			
			손실보상 및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공유수면관리법 제18조			
			청문	공유수면관리법 제19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공유수면관리법 제24조			
후계농업경영 경영	1	후계농업경영인·전임농업인 관리 사무	후계농업경영인·전임농업인의 대상자 선정 및 사후관리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3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장·군수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3조
농업보조금	1	환경농업보조금 관리 사무	환경농업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15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군구청장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정 제13조

농지 전용	1-4	농지전용의 허가관리 사무	농지전용에 대한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및 협의	농지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제2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군구청장	농지법 시행령 제71조 2항
			농지전용허가의 취소, 관계 공사의 중단, 조업의 정지, 사업규모의 축소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청문, 불법전용농지 등의 조사 완상회복명령 및 대집행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농지법 제42조 농지법 제38조			
양곡 수급	1-7	쌀소득 등의 보전을 위한 직접직불제 지급 등에 관한 사무	농업 이용가능여부의 인정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군구청장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7조 1항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및 등록증 교부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7조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변경등록 및 지급대상 농지의 양수·임차·사용차에 관한 신고수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8조			
			고정직접지불금의 지급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9조			
			변동직접지불금의 지급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토양성분검사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농산물유통가공	1-3	쌀소득 작점직불제 지급관리 사무	쌀소득보전직접지불금 일부 또는 전액의 지급금지, 지급금 회수 및 등록제한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 폐업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폐업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제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업무	쌀소득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3조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군구청장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2항
수산물가공	1-4	수산물가공업등록 사무	수산물가공업 등록 수산물가공업에 대한 정지명령 또는 등록취소 오염물질의 배출, 가축의 사육행위 및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여부의 확인·조사 청문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제1항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0조 수산물품질관리법 제46조제1항제3호의3 수산물품질관리법 제50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군구청장	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4항
농지전용	1	농지전용 협의 사무	농지전용에 대한 협의 농업진흥지역안 3천제곱미터 미만 농지 농업진흥지역밖 3만제곱미터 미만 농지 지역·지구 내 10만제곱미터 미만 농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77개 개별법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군구청장	행정권한의위임 위탁규정 제29조 제2항 농지법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2항

양정 책	1	말기임환자전문 의료기관 사무	제가임환자관리사업에 대한 권한	암관리법 제11조 제3항	보건복지가 족부장관	시군구청장	암관리법시행령 제11조 제2항
보육 교사	1-2	보육교사 자격관리 사무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권한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영유아보육법 제47조	보건복지가 족부장관	시군구청장	영유아보육법시 행령 제26조 제2항
		보조사양의 감시관리 사무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감사 및 보고의 수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 관한 권한	산림조합법 제22조	산림청장	지방자치단체 의 장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8조 1항
백두 대간 보훈	1	백두대간보훈 사무	지원금액의 지급	백두대간보훈에 관한 법률 제11조의5 제5항	산림청장	시장·군수	백두대간보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1항
		성매매피해자 지원 사무	지원시설 및 상담소에 대한 지도·감독 과태료의 부과·징수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24조 제2항	여성부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성매매방지및피 해자보호등에관 한법률시행령 제4조
북한 주민 보훈	1	북한이탈주민보 훈·정착지원에 관한 사무	보호임무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 한법률 제22조제1항	통일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의 장	북한이탈주민의 보호및정착지원 에관한법률 제22조제2항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 수질개선및주민 지원등에관한법 률시행령 제30조 제2항	시장·군수	환경부장관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 제4조제5항	수변구역의 관리	한강수계관리 사무	1-3	한강 수계 보전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 등에관한법률 제4조제2항	설치허가	관리카드의 작성·비치
보조 금 관리	지방자치단체 의 장	중앙관서의 장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2항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취소 관련 사무	1-7	보조 금 관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8조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1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6조	보조사업실적보고서의 접수	보조사업의 실적심사 및 보조금의 금액의 확정

국유재산관리	1	국유재산관리 사무	집중재산의 대부로 및 연체료 징수	국세징수법 제23조 및 동법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	관리청	지방자치단체 의 장	국유재산법 제38조제3항	
내륙 습지 보호	1	내륙습지의 토지매수 및 손실보상 사무	내륙습지의 토지 매수	습지보전법 제20조의2	환경부	시군구청장	습지보전법 제21조, 시행령 제18조	
자동차 검사	1	자동차검사 및 청문 등에 관한 사무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74조	국토해양부	시군구청장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7조제1항	
개발	1-4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관리 사무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1조제1항, 제25조	국토해양부	시군구청장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부담금의 감면	제23조				시행령 제40조제4항
			허가의 취소 및 체납처분	제25조제6항				시행령 제40조제3항
			부담금의 환급	제25조제7항				시행령 제40조제3항
재건축부담금	1-12	재건축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무	주탁가액의 신청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국토해양부	시군구청장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발부담금	1-18	개발부담금 관리 사무	개발비용의 확인	시행령 제9조제4항	국토해양부	시군구청장	동 시행령 제17조제11항
				주택재건축사업의 조사			시행령 제15조
			지가의 산정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담금 결정 부과	제14조,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20조			
			납부의 고지	제15조			
			부담금의 추징	제16조			
			물납의 인정 및 징수	제18조제2항			
			납부기일전 징수 및 고지	제19조			
			납부기일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인정과 징수	제20조			
			납부의 독촉	제21조			
			체납 처분	제22조			
			결산 처분	제23조			
			제출된 자료의 징수	제24조			
			자료의 통보 및 접수	제25조			
			과태료 부과 징수	제29조			
			개발사업완료에 관한 신고의 접수, 현지확인 및 통지	시행령 제9조제3항제1호, 제2호			개발이익환수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
			감정평가법인의 지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5호 나목			
			개발비용의 산출, 개발비용의 확인 또는 금액산출 의뢰	시행령 제12조제3항, 제5항			
			사실조회 등의 조치	시행령 제26조			
			대상사업의 고지	시행령 제27조			

3. 제주특별자치도로 이양대상 목록

77개

분야	연번	소기능	단위사무	근거법령	원처리권자	현처리권자	위임근거법령
보훈	1-11	국가유공자 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	신체검사의 신청 접수, 신체검사의 실시 의뢰, 상이등급의 판정 및 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3	국가보훈처 장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시행령 제102조제1항
			등록 및 결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신상변동신고 및 이에 따른 조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2			
			상이의 추가인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5			
			보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 제8조			
			취업보호신청의 접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1조의2			
			취업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			
			진료의 위탁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2조제2항			
			보철구의 지급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3조의2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82조의2					
		범죄경력의 확인요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9조제5항					
		협의 및 의견청취	현충시설의지정·관리등에관한규정 제5조제2항, 제6조, 제16조		국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현충시설의지정·관리등에관한 규정 제16조	
보훈 1-3	현충시설 관리에 대한 사무	관리자의 지정 및 명예관리자의 위촉	현충시설의지정·관리등에관한규정 제7조, 제9조, 제16조		국가	보훈처장		
		실태조사	현충시설의지정·관리등에관한규정 제13조, 제16조					
		등록 및 결정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보훈 1-3	독립유공자 지원 사무	취임보호 관리 및 직업재활훈련 실시 등 직업훈련대상자의 추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제36조제2항 및 제3항, 제37조, 제38조제2항		국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제1항	
		진료의 위탁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7조제3항					
보훈 1-5	참전유공자 지원 사무	참전유공자의 등록신청의 수리, 참전사실의 확인 요청, 등록결정 및 등록사실의 통지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5조		국가	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3조	
		법적용배제자 등의 결정에 관한 당사자의 출석·의견청취 및 결과통지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조					

보훈 1-6	5.18민주유공자 지원 사무	증서의 교부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4조제2호	국가 보훈처장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5.18민주유공자 예우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0조제1항
		참전유공자증의 교부 및 재교부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조			
보훈 1-11	고엽제후유증환 자지원사무	장제보조비 지급신청의 수리 및 지급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11조	국가 보훈처장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등에관 한법률시행령 제16조
		등록 및 결정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7조			
		취업지원신청의 접수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22조의2			
		취업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1조제1항			
		가로의 위탁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4조제2항			
		보철구의 지급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35조			
		시설물의 설치·건립 등에 관한 사항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2조			
		등록신청서의 수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 률 제4조제1항, 제8조제2항			
		확인의 요청 및 확인통보서의 수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 률 제4조제2항, 제3항			

검진의 의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예관한법 률 제4조제4항				
사실의 통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예관한법 률 제4조제5항				
검진결과통보서의 수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예관한법 률 제4조제6항				
고엽제 후유증환자 등인지 여부의 결정·통지와 재검진 신청서의 수리 및 재검진 의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예관한법 률 제4조제7항, 제7조제5항, 제8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6조				
법 적용대상자로 결정된 자의 등록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예관한법 률제4조제8항, 제7조제5항, 제8조제2항				
신규·재심·재확인·재분류신체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예관한법 률 제6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7조				
보상 신청의 접수 및 보상 금액의 지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예관한법 률 제6조제4항				
진료의 실시, 위탁진료의 의뢰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예관한법				

보훈 1-6	특수임무수행지 원 사무	진료대상자에 대한 통지 검진결과통보서의 수리 신체검사의 실시 등록신청의 접수 및 등록결정과 보상심의위원회 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통보 접수, 등록신청인에게의 통지, 자료의 제출·보완 또는 추가 요구 및 특수임무부상자증 등의 교부 취업지원 신청의 접수 취업능력개발 장려금의 지급 치료의 위탁 보철구의 지급 실태조사	를 제7조제1항·제2항 동법시행령 제8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 률 제7조제4항	국가 보훈처장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6조제1항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제2호 동법시행령 제9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6조 동법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21조의2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2제1항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33조제2항 특수임무수행자지원에관한법률 제34조			
보훈 1-17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사무	교육 또는 훈련 신청의 수리,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의 접수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기관에의 대상자 추천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 제8조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 제13조 및 영 제14조	국가 보훈처장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제1항

				제대군인지원예관한법 제14조 및 영 제17조	
취업희망신청서의 접수 및 상담등신청의 수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국가기관 등의 기능직공무원등의 정원 및 채용에 관한 통보의 접수, 국가기관 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점검, 시정 또는 보완요구 및 그 결과통보의 접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	
업체 등의 신고 접수, 업체 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설명 요구와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에 관한 지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고용명령 및 취업통지				제대군인지원예관한법 제17조 및 영 제20조	
창업교육신청 또는 창업상담신청 수리				제대군인지원예관한법 제18조의2제2항 및 영 제20조의3제3항	
적극적 구직활동의 확인				제대군인지원예관한법 제18조의2제6항 및 영 제20조의3	
전직지원금의 지급신청의 수리, 지급결정 및 통지, 전직지원금의 지급				제대군인지원예관한법 제18조의3제1항, 영 제20조의5제1항 및 제2항	
지급중단의 사전통지 및 결정통지					

	전직지원금의 환수	제대군인지원예관한법 제18조의3제2항 및 영 제20조의7			
	전직지원금의 결손처분	제대군인지원예관한법 제18조의3제3항			
	수입료 보조 신청의 수리,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발급 및 입학금·수업료의 지급	제대군인지원예관한법 제19조 및 영 제22조			
	주택의 우선분양 세대수 및 입주대상자 선정기준 결정	제대군인지원예관한법 제19조 및 영 제22조			
	법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결정과 법적용대상자로의 결정	제대군인지원예관한법 제2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른 취업사실 등의 통보의 접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의2			
	취학사항변동통지서의 접수	제대군인지원예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제5항			

산림 1-15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국유림의 경영관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산림청장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 1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0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국유림의 경영관리 평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산림청장	제주특별 자치도지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8조 1항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시행·분석 및 평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국유림경영계획의 수립·시행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국유림경영계획의 동의·승인 및 사업신고의 수리에 관한 권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국유림의 목재생산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국유림의 보호협약체결과 임신물의 양여 및 국유림보호협약의 해지에 관한 권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국유림의 매각·교환·관리할 및 매수에 관한 권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에 관한 권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0조									
권리양도 및 명의변경의 허가에 관한 권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대부등의 취소, 대부·사용허가, 산림의 반환조치, 부당이득의 반환 및 원상회복조치, 대부료등의 반환조치에 관한 권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국유임산물의 매각에 관한 권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매각계약의 해제에 관한 권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국유임산물의 무상양여에 관한 권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첨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			